발 간 사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의회 의장 위성식입니다.

군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8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주민의 참여가 증대되면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씨앗을 토대로 함께 성장한 강진군의회도 지역의 목소리와 힘이 커나감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 모두 군민들의 높아진 민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발 맞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대표성과 색깔을 잊지 않고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의회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 권력 집중의 방지, 군민의 요구 반영, 강진이라는 지역색에 맞는 자치모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협력, 소통을 통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강진군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진군의회에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의회지 제29호는 2018년 한해 동안의 우리 군의회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한 책자입니다. 매년 이렇게 의회지를 발간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아울러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상 정립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회지가 단순히 지난 1년 동안의 의회운영 및 활동 기록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강진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

강진군의회 의장 위성식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2019년 제29호

강진군의회지

의회

contents

04 | 의회 현황
05 | 의원 프로필
10 | 회기별 의사운영
18 | 주요 처리안건
19 | 조례 · 규칙 제 · 개정안
77 | 예산안 등 일반의안
95 | 군정질문 · 답변
13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188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9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213 | 의회안내

제8대 의회 현황

의회구성

■의원수 : 8명
■임 기 : 4년 (2018. 7. 1. ~ 2021. 6. 30.)
■의장단(후반기)
- 의장 : 위성식(강진-가 / 강진읍, 성전면, 도암면, 신전면)
- 부의장 : 문춘단(강진-나 /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의회운영위원장 : 김창주(강진-가 / 강진읍, 성전면, 도암면, 신전면)
- 행정복지위원장 : 김명희(강진-나 /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 농업경제위원장 : 서순선(강진-나 /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의원 직업별 현황

계	농업	수산업	상업	기타
8	2	-	2	4

■의원 연령별 현황

계	45~55	56~60	61~70	비고
8	3	2	3	

의회사무과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원
15	3	1	4	3	0	4

의 회 청 사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강진군청 본관 3층)

계	본회의장	특위회의장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의회 사무과	민원 대기실	의정 상담실
913.35㎡	179.5	53.85	71.8	35.9	333.6	107.7	53.8	77.2

강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의장 위 성 식

생년월일	1955. 9. 21. (만63세)
선 거 구	강진 – 가
주요경력	· 성화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 현) 제8대 강진군의회 의장 · 전) 제7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 전) 장흥교도소 장흥, 강진 교정협의회장 · 전) 대한수렵관리협회 강진지회장 · 전) 강진군체육회 궁도협의회장 · 2004 법무부장관상(2회), 여성가족부(1회) 도지사(1회) 수상 · 2013 강진군민의 상(사회 부문) 수상 · 2014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2014 전라남도지사 표창 수상



부의장 문 춘 단

생년월일	1963. 2. 28. (만56세)
선 거 구	강진 – 나
주요경력	·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상담임상심리학과) ·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6, 7대 강진군의회 의원 · 사회적 경제 전국기초의원협의회 공동대표 · 미래교육위원 · 목포극동방송국 강진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강진군 청소년상담 자원봉사회 회장 역임

강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의회운영위원장 김 창 주

생년월일	1972. 9. 16. (만46세)
선 거 구	강진 – 가
주요경력	· 강진고등학교 졸업 · 현) 제8대 강진군의회 의원 · 현) 희망사회연구소 소장 · 현) 강진진보연대 공동대표 · 현) 5.18민중항쟁기념사업 강진행사위원회 공동대표 · 현) 강진교육희망연대 운영위원 · 전) 강진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처장 · 전) 박근혜정권퇴진 강진군민운동본부 공동대표·집행위원장 · 전) 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협동조합개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김 명 희

생년월일	1953. 9. 2. (만65세)
선 거 구	강진 – 나
주요경력	· 성화대학 아동복지과 졸업 · 현)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 부위원장 · 현) 민주평통자문 문화예술분과위원장 · 현) 전국 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현)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 · 현) 강진중 운영위원 · 전) 제7대 강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전) 제7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전) 영랑기념사업 부회장 · 전) 강진여성라이온스클럽 초대, 2대 회장

강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농업경제위원장 서 순 선

생년월일	1961. 1. 20. (만58세)
선 거 구	강진 – 나
주요경력	· 성화대학 졸업 · 현)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농업경제위원장 · 전) 새천년민주당 조직국장 · 전) 국회의원 보좌관 · 강진청년(JC) 회장 · 전남지구 상임부회장 · 일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 · 민주평통 자문위원 · 칠량 선후회 회장



의 원 윤 기 현

생년월일	1953. 2. 28. (만66세)
선 거 구	강진 – 가
주요경력	· 고구려대학 한약자원개발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중 · 전) 지역사회개발 강진군청록회회장 · 전) 강진군 105회 회장 · 전) 믿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전) 강진군 청소년 지도위원 · 전) 전국 새농민협회 강진 지회장 · 전) 제6대 강진군의회 의원 전반기 부의장 · 전) 민주당 강진군 지역당원위원회 운영위원장

강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의원 배 홍 준

생년월일	1961. 7. 10. (만58세)
선 거 구	강진 – 가
주요경력	· 성화대학 사회복지과 수료 · 초당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현)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전) 강진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 제7대 강진군의회 후반기 농업경제위원장 · 전) 신전면 지역발전협의회 부회장 · 전) 신전면 선후협심회장 · 전) 민주당 강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 전) 강진경찰서 보안위원



의원 김 보 미

생년월일	1989. 12. 4. (만29세)
선 거 구	비례대표
주요경력	· 강진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 제8대 강진군의회 의원 · TJ조형디자인연구소 대표 · (사)한국청년문화예술인협회 회장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홍보소통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여성부위원장 ·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전남여성특보

의회운영

◇ 회기별 의사운영

◇ 주요 처리안건

○ 조례 · 규칙 제 · 개정안

○ 예산안 등 일반의안



회기별 의사운영

2018년 한 해 동안 제247회 임시회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8회, 62일간의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1. 15. ~ 1. 17. (3일간)
• 상정안건 : 6건(조례안 3, 기타 3)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1. 15.(월) 10:00	제1차	1.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15.(월)		o 상임위원회 운영	
1. 16.(화) 10:00	제2차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17.(수) 14:00	제3차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강진군 사회 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3. 22. ~ 3. 29.(8일간)
• 상정안건 : 19건(조례안 10, 예산안 1, 재의요구 1, 기타 7)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3. 22.(목) 10:00	제1차	1.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3. 23.(금) 10:00	제2차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 건	
3. 24.(토) ~ 3. 28.(수)	휴회	o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3. 29.(목) 10:00	제3차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지원 및 운영 조례안 3.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조례안 9.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10.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 11.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시기 변경의 건	

제2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7. 4.(1일)
• 상정안건 : 9건(기타 9)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7. 4.(월) 10:00	제1차	1.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2. 제24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6.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8.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농업경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7. 11. ~ 7. 19.(9일간)
• 상정안건 : 21건(조례안 16, 기타 5)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7. 11.(수) 10:00	제1차	1.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7. 12.(목) 9:30	제2차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7. 13.(금) 10:00	제3차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7. 14.(토) ~ 7. 15.(일)	휴회	o 부의 안건에 대한 자료 검토 및 심사	
7. 16.(월) 10:00	제4차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7. 17.(화) ~ 7. 18.(수)	휴회	o 상임위원회 운영	
7. 19.(목) 10:00	제5차	1.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조례안 6.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기본조례안 8.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정 조례안 15.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16.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제정조례안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8. 24. ~ 8. 27.(4일간)
• 상정안건 : 9건(조례안 3, 기타 6)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8. 24.(금) 10:00	제1차	1.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5분 자유 발언의 건 4. 휴회의 건	
8. 25.(토) ~ 8. 26.(일)	휴회	o 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8. 27.(월) 10:00	제2차	1.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원 징계 요구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9. 5. ~ 9. 14.(10일간)
• 상정안건 : 13건(조례안 1, 규칙안 1, 예산안 1,기타 10)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9. 5.(수) 10:00	제1차	1.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5.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9. 휴회의 건	
9. 6.(목)~9. 11.(화)	휴회	o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9. 12.(수) 9:30	제2차	1.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2.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4.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5.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6. 의원 징계 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9. 13.(목)	휴회	o 상임위원회 운영	
9. 14.(금) 10:00	제3차	1.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 회　　기 : 2018. 11. 14.(1일)
• 상정안건 : 12건(조례안 6, 규약안 1,기타 5)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11. 14.(수) 10:00	제1차	1.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6.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진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조례안 8.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 2018. 11. 23. ~ 12. 21.(29일간)
• 상정안건 : 24건(조례안 10, 규약안 1, 예산안 2, 건의안 1, 기타 10)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11. 23.(금) 10:00	제1차	1.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일시	차수	부 의안 건	비고
11. 24.(토)~12. 12.(수)	휴회	o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운영	
12. 13.(수) 10:00	제2차	1. 2019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2.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9년도 본예산안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2. 14.(목)~12. 20.(목)	휴회	o 상임위원회 운영	
12. 21.(금) 10:00	제3차	1.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진군 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 제8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	

주요처리안건

▦ 처리현황 (2018. 1. 1.~12. 31.)

구분	접 수	처 리(건)			비 고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계	113	96	17	-	
조례 · 규칙안	50	35	15	-	
규약 · 건의안	3	3	-	-	
예산안 · 재의요구	5	3	2	-	
기 타	55	55	-	-	

▦ 회기별 처리 현황

회별	계	조례 · 규칙안	규약 · 건의안	예산안 · 재의요구	기타
계	113	50	3	5	55
제247회 임시회 (1. 15.~1. 27.)	6	3	-	-	3
제248회 임시회 (3. 22.~3. 29.)	19	10	-	2	7
제249회 임시회 (7. 4.)	9	-	-	-	9
제250회 임시회 (7. 11.~7. 19.)	21	16	-	-	5
제251회 임시회 (8. 24.~8. 27.)	9	3	-	-	6
제252회 임시회 (9. 5.~9. 14.)	13	2	-	1	10
제253회 임시회 (11. 14.)	12	6	1	-	5
제254회 임시회 (11. 23.~12. 21.)	24	10	2	2	10

조례·규칙 제·개정안

(1) 강진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개정이유

가. 기존 강진청자축제 조례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강진군 향토축제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강진군에서 지원 할 각종 향토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축제의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위원회 구성·기능·임기·직무·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라. 행사계획 등의 승인·계획 수립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9조~12조)

마. 위원회 경비의 보조·실비보상 및 지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16조)

바. 결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사. 의견청취·정보공개·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0조)

5. 처리결과

○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1. 17)에서 원안가결

(2)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의 청사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목적,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나.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다. 건립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라. 건립기금운영위원회의 기능·직무·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10조)

마. 건립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 12조)

5. 처리결과

○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1. 17)에서 원안가결

(3)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사회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원 결정(안 제3조)

나. 지원 기준(안 제4조)

다. 지원 실시(안 제6조)

라. 지급 방법(안 제8조)

5. 처리결과

○ 제2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1. 17)에서 원안가결

(4)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배홍준 의원 외 1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장의 추천대상 등을 규정(안 제2조)

○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 추천요청 규정(안 제3조)

○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제출 규정(안 제4조)

○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에 대한 규정(안 제5조)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3. 22.)에서 원안가결

(5)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윤재남 의원 외 1

3. 제안이유

○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제1차 정례회를 원활하게 개최·운영하기 위함

4. 주요내용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안 제4조 1항)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3. 23.)에서 원안가결

(6)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조례안 제1조, 제2조)

나. 민·관 추진위원회 등 활동 지원 (조례안 제4조, 제12조)

다. 민·관 추진위원회 등 구성·운영 (조례안 제5조 ~ 제11조)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수정가결

(7)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강진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지원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 정책 추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여 타 위원회 위원과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본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 위원수 등을 조정하여 수정함.

4. 주요내용

○ 제4조(활동 지원) 제1항 5호

-“농업인 워크숍,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농업인 워크숍,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

○ 제6조(추진위원회 구성) 제1항

-“50명”을 “35명”으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3. 28.)에서 가결

(8) 강진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늘어나는 청소년 시설의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 필요

4.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시설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마. 시설의 이용(안 제6조 ~ 제14조)
바. 수련시설의 운영(안 제15조 ~ 제25조)
사. 보칙(안 제26조 ~ 제29조)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원안가결

(9)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경우 제19조(복지증진)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더 세부적으로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을 선진지 교육 및 견학으로 명확화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제3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항 7호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 및 견학”으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3. 28.)에서 가결

(10)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기존 조례의 경우 제19조(복지증진)에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의 내용이 기술이 되어있으나, 이를 더 세부적으로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신설(안 제30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및 앞으로의 사업을 세분화 하여 신설하여 국내·외 교육 등을 명시하여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확화 함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수정가결

(11)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지원대상을 현행 위생업소에서 단체, 영업주, 종사자로 명확화하고 외식업 변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사업의 지원대상을 강진군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제3조(지원대상)

-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위생단체, 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자로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한다.”로 수정

ㅇ 제4조(지원사업) 제1항 5호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 개발 및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3. 28.)에서 가결

(12)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원대상을 현행 위생업소에서 단체, 영업주, 종사자로 명확화하고, 외식업 변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기존 조례의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상의 포괄적인 업소의 정의에서 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업소, 모범 업소, 우수업소, 최우수업소를 세분화 하여 정의함

나. 지원대상의 정의(안 제3조)

1)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공중위생업소로 한정된 기존 지원대상의 범위를 식품위생법과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든 인허가 업소로 정의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정의하여 '단체'에 대해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지원사업 범위(안 제4조)

기존 조례에 명시된 위생용품,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화 함

라.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10조)

1) 위원장 : 부군수 → 주민복지실장

2) 당연직 : 주민복지실장 → 문화관광과장, 스포츠산업단장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수정가결

(13)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4.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안 제12조)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유족을 지원대상에 포함

○ 보훈명예수당 신청 및 처리기준 명확화(안 제13조)

- 보훈명예수당 신청처리절차 및 수당 개시일 명확화
- 「보훈명예수당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에 따른 처리기간단축 및 구비서류 간소화

○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에 의거한 강진군 참전명예수당과의 중복지원 예방(안 제14조)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원안가결

(14)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확대(안 제2조 및 제3조)

-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유족(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을 대상자에 포함

○ 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처리기준 명확화(안 제5조 및 제7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 및 수당개시·중지일 명확화

-「보훈명예수당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에 따른 처리기간단축 및 구비서류 간소화
ㅇ「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강진군 보훈명예수당과의 중복지원 예방(안 제8조)

5. 처리결과

ㅇ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원안가결

(15)2019 올해의 관광도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ㅇ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ㅇ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와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수정함

4. 주요내용

ㅇ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1항
- “50명”을 “35명”으로 수정

ㅇ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항
-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실장, 미래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과장, 해양산림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총무과장, 강진읍장이 되고, 각 부서별 업무 팀장 등을 포함 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각 부서별 업무 팀장 등을 포함 할 수 있다”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수정가결

(16)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육성사업 활동 지원(안 제3조)

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1) 구성 : 50명 이내, 공동위원장 2명(부군수, 선출직)

2) 임기 : 위촉일로부터 ~ 2019. 12. 31.

3) 기능 : 주요정책 심의·의결, 기본계획 수립 등

5. 처리결과

ㅇ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수정가결

(17)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문춘단의원 외 1

3. 제안이유

○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자치에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군수는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촉진하여야 함
- 2년 단위로 자치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시행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및 안 제11조)
-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
-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한하여 연임 가능
-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

○ 지원(안 제13조)
-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원안가결

(18)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 건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역개발과 문화·예술·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를 한 외부인사에게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함.

4. 선정대상

○ 이규형 (남, 89세 / 광주 삼락서예원 원장)

○ 주요경력 : 광주교육대학교(서예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

5. 선정근거 및 선정방법

○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시도(시군) 출신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 한다.

○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강진군수가 수여한다.

6. 주무과 의견

○ 강진문화원에서 추천한 이규형(광주삼락서예원) 원장은 1973년 3월 강진문화원 연묵회 강사로 위촉되어 2018년 3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강진군의 서예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열정을 바쳐 강진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 우리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서예분야에서 강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3.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상수원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신설(안 제3조의 2) : 2023년 12월 31일

나. 존속기한 경과한 후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 가능

5. 처리결과

○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3. 29.)에서 원안가결

(20)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운영 조례의 위탁 계약기간 “3년 이내로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해야 하고,

나. 「장애인복지법」제62조제1항(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 쇄 등)에 의거 직업재활시설이 폐쇄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순기능을 승계함에 따라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관리(제7조제2항) 조항 개정

-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직업재활시설 폐쇄에 따른 조례 제명 등 일괄 변경

다. 「도로명주소법」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른 위치 표시 변경
-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1-2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37-7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21)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이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양로시설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기간(제12조 1항)
-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기간연장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하고, 기간연장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5년을”초과할 수 없다.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22) 강진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제21조 3호 국내 · 외 선진지 시찰 및 현장체험을 국내 · 외 연수로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1조 3호

- “국내 · 외 선진지 시찰 및 현장체험”을 “국내 · 외 연수”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23)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과 상이하여 상위법을 준수하여 일부 개정함으로써 강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함

4. 주요내용

가. 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정비(안 제5조)

1) 개정 전 : 대표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2) 개정 후 : 대표협의체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 개정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준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나. 실무협의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비(안 제6조)

1) 개정 전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2) 개정 후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 개정 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준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다. 읍.면 협의체 인원 조정(안 제8조)

1) 개정 전 :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별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 개정 후 :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별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개정 사유 : 상위법 준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

라. 협의체 운영지원 세분화(안 제21조)

1) 개정 전 :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별도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개정 후 :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지원할 수 있다.

- 표창 및 격려
-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행사
- 국내·외 선진지 시찰 및 현장체험
- 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 각종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 사유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세분화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24) 강진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5조 제1항

- “성별을 고려하여”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수정

○ 제5조 제3항

1호 중 “전체위원의 100분의 45이상”을 “7명”으로

2호 중 “전체위원의 100분의 20이하”를 “3명”으로
3호 중 “전체위원의 100분의 15이하”를 “2명”으로
4호 중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를 “1명”으로
5호 중 “전체위원의 100분의 10이하”를 “1명”으로 수정

ㅇ 제27조 제2항 중 “제27조제3항”을 “제26조 제3항”으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25)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보육환경 지원 근거 마련

4.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운영일반(안 제20~24조, 안 제33 ~ 35조)
- 보육대상의 우선순위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나. 비용 보조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안 제36조)

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 도모(안 제25 ~ 32조)

라. 지도 · 감독(안 제38조)
-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지도 및 감독 실시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26)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제7조 5호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를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 · 외 연수로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7조 5호

- “센터 종사자 교육비, 워크숍, 벤치마킹 등 역량강화 경비”를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워크숍, 국내 · 외 연수”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27)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 교육비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를 더 세부적으로 사업비 지원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사업비의 지원(안 제7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28)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ㅇ 제30조 제1항 7호 중 국내 · 외 선진지 교육 및 견학을 국내 · 외 연수로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ㅇ 제30조 제1항 7호 중

-“국내 · 외 선진지 교육 및 견학”를 “국내 · 외 연수”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29)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교육에 '국내·외'를 명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4. 주요내용

제30조 제1항 제7호(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여성리더 역량 강화를위한 선진지 교육 및 견학에 '국내·외'를 명시함.

5. 처리결과

ㅇ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30) 강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직접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가능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

제9호/2017.12.29.개정)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포괄 정의한 기존 조례를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시설사용계약의 우선대상 설정, 푸드트럭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등 푸드트럭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개정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입법목적 확대 (안 제1조)

나. 영업장소와 필요한 첨부서류 명시 (안 제2조 및 제3조)

다. 영업장소 지정신청 (안 제4조)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시설사용계약의 우선 계약 대상 (안 제5조)

-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선정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 규정(취업애로 청년, 급여수급자 등)

마. 영업 시 준수사항 (안 제6조)

- 시설사용 계약상의 의무사항 이행, 위생·안전 등의 관련법령 준수, 영업기간 만료에 따른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영업 시 준수사항을 규정

바. 영업신고 표시 부착 (안 제7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31)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ㅇ 제3조 지원대상에서 위생단체를 삭제하고, 제4조 지원사업 중 제1항 5호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국내 · 외 연수로 수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ㅇ 제3조 중

-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에서 “위생단체”를 삭제하고 “위생업소로 한다.”로 수정

ㅇ 제4조 제1항 5호 중

-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국내·외 연수”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32)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①지원대상에 위생단체, ②지원사업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각 각 포함하여 위생단체 지원과 국외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의 정의(안 제3조)

-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영업자단체를 지원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생단체'에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안 제4조)

- 기존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에 추가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명시하여 음식점 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33)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기존 조례와 같이 "민원인"이란 정의를 명시하여 주민이 조례에 대한 해석 및 용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 6호 신설

- "민원인"이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7. 17.)에서 수정가결

(34) 강진군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 12. 26. 개정, 2018. 1. 1. 시행)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의「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명「강진군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함.

나.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안 제4조~제5조)

다. 납세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안 제6조~제7조)

라.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9조)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사.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4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35)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5292호, 2017.12.26.공포, 2018.1.1 시행)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안 제14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36)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 일원화

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

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법령명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돼 이를 반영하여 개정

4. 주요내용

가. 귀농 지원의 목적, 귀농·귀농자의 정의 변경(안 제1~제2조)

나. 귀농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귀농인 의료지원 삭제 및 체류형 귀농 지원 추가(안 제9조)

라. 귀농 지원금의 회수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37)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농업경제위원회

3. 제안이유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 제2항, 별지 제2호의1 서식 제9조 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상품권 환급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환급의 금지) 제2항

- “상품권의”를 “상품권을 사용할”로 수정

ㅇ 별지 제2호의1 서식, 제9조(환급의 금지) 제2항
- “상품권의”를 “상품권을 사용할”로 수정

5. 처리결과

ㅇ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2018. 7. 18.)에서 수정가결

(38)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상품권 운영 전반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강진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임시가맹점, 인센티브 정의 반영(안 제2조)
1) 임시가맹점 : 지역축제・행사 시 한시적 상품권 거래 가능 업소
2) 인센티브 : 판매대행기관,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

나.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등 도입 근거 신설(안 제3조)
- 상품권의 안전유통 및 관리를 위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 설치 근거 신설

다. 상품권 종류 추가 발행 근거 신설(안 제4조)
- 현행 5천원, 1만원, 5만원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발행 가능

라. 가맹점 지정 및 관리 규정 등 변경(안 제6조)
1) 노점상가 및 임시가맹점 지정 근거 신설
2)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가맹점 지정 및 지정취소 범위 설정 근거 신설

마. 상품권 폐기절차 변경(안 제7조)

- 담당공무원 임석폐기를 대행기관 직권 폐기 후 군에 보고하는 절차로 변경

바. 상품권 할인판매 변경(안 제11조)

1) 설·추석 등 100분의 5의 범의 내에서 할인 단서조항 신설

2) 1인 구매한도를 일 50만원에서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으로 조정

3) 상품권 할인구매한도 적용 예외 조항 신설

사. 상품권 활성화 시책 신설(안 제12조)

-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대행기관,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39)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주요시설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5조)

다.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 농어민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3조)

라.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한 사항 및 상권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8조)

마. 상인회의 설립, 등록,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4조)

바. 시설물의 소유권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6조)

사. 시설물의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사용,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제30조)

아. 지도감독 및 관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31~제33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40)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농업경제위원회

3. 제안이유

○ 주민협의체 정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인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2조(정의) 2호

- “5명 이상의”를 삭제

○ 제5조(주민협의체) 제1항

-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를 “10명 이상으로”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농업경제위원회(2018. 7. 18.)에서 수정가결

(41) 강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마.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상생협력 상가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바.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원금액의 환수,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사.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세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아.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안 제21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수정가결

(42)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법제처 및 행정자치부 조례개선 정비과제 반영

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

1) 임상에 대하여 '입목본수도'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 축적'기준으로 개정하고, 표고의 산정방식을 구체화(안 제17조)

2)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으로 규정(안 제17조제3항)

다.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규정

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강진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라. 용도지구 통·폐합, 신설로 관련 조항 정비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에 통합하고,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시가지·특화 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안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5조, 별표29, 별표 31)

<table>
<tr><th colspan="2">현 행</th><th>개정 후</th></tr>
<tr><td>미관지구</td><td>경관지구</td><td>경관지구</td></tr>
<tr><td>-</td><td>자연경관지구</td><td>자연경관지구</td></tr>
<tr><td>중심지미관지구</td><td rowspan="2">시가지경관지구</td><td rowspan="2">시가지경관지구</td></tr>
<tr><td>일반미관지구</td></tr>
<tr><td>역사문화미관지구</td><td>수변경관지구</td><td>특화경관지구</td></tr>
</table>

2)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고, 보호지구가 역사 문화환경·

중요시설물·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 기존 학교시설보호 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신설(안 제33조제33조의2, 제35조,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

<table>
<tr><th colspan="2">현 행</th><th colspan="2">개정 후</th></tr>
<tr><th>보존지구</th><th>시설보호지구</th><th>보호지구</th><th>제한지구</th></tr>
<tr><td>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td><td>-</td><td>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td><td>-</td></tr>
<tr><td rowspan="3">중요시설물
보존지구</td><td>공용시설보호지구</td><td rowspan="3">중요시설물
보호지구</td><td rowspan="3">-</td></tr>
<tr><td>항만시설보호지구</td></tr>
<tr><td>공항시설보호지구</td></tr>
<tr><td>생태계보존지구</td><td>-</td><td>생태계보호지구</td><td>-</td></tr>
<tr><td>-</td><td>학교시설보호지구</td><td>-</td><td>특정용도제한지구</td></tr>
</table>

마.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 신설(안 제33조의3)

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안 제51조)

사. 용도지역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 15, 별표 17, 별표 18, 별표 20, 별표 21, 별표 24, 별표 25, 별표 26)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43) 강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 변경(안 제7조, 안 제8조)

마. 준용규정 등(안 제9조, 안 제10조)

5. 처리결과

○ 제25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18. 7. 19.)에서 원안가결

(4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민선 7기 군정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효율중심의 일하는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나. 일자리 전담기구,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다산청렴수련원건립 사업, 지진대응, 지역금융지원, 정보기반보호정책, 창농플랫폼, 도시재생사업, 납세보호관 제도 추진 등 정부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 증원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조정 (안 제2조, 별표3)

○ 정원 총수 : 578명 → 598명 (+ 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66명 → 586명 (+ 20명)

■ 본청 : 266명 → 285명 (+ 19명)　　■ 직속기관 : 87명 → 88명 (+ 1명)

■ 사 업 소 : 66명 → 66명 (-)　　■ 읍면 : 147명 → 147명 (-)

- 의회사무과 정원 : 12명 → 12명 (-)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 별표 2)

○ 일 반 직 공무원

- 6급 비율 25% → 27% (+ 2%)
- 7급 비율 28% → 30% (+ 2%)
- 9급 비율 15% → 11% (△ 4%)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 반 직 : 542명 → 562명 (+20명)

- 5급 28명 → 29명 (+ 1명)
- 6급 이하506명 → 525명 (+19명)

5. 처리결과

○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8. 27.)에서 원안가결

(45)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 산림행정 및 “정책”의 명시화를 통한 우리군 산림 발전에 대한 소관 과의 관심 제고

와 정책화 노력 기대

4. 주요내용

○ 제4조 제2항 6호 다 중

- “산림행정”을 “산림행정 및 정책”으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2018. 8. 24.)에서 수정가결

(46)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민선7기 군정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과 신규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효율 중심’의 행정기능 전환을 통한 일하는 조직기반 구축

4. 주요내용

가. 본청 1과 신설 : 1과 증설

• 2실 12과 1의회 2직속 5사업소 1읍 10면

→ 2실 13과 1의회 2직속 5사업소 1읍 10면

당초	변경	비고
미래산업과	일자리창출과	폐지 후 신설
문화관광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과 분리 증설
지역개발과	건설과	기능개편·과명칭 변경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교통과	기능개편·과명칭 변경

나. 사업소 명칭변경 : 다산기념관 → 다산박물관

다. 분장사무 규정 및 재정비

• 신설 행정기구 분장사무 규정 및 행정기구별 분장사무 재정비

5. 처리결과

○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8. 27.)에서 수정가결

(47)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배홍준 의원

3.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 부분을 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소 등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원의 궐원 시, 위원 수 조정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 정비(안 제3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 정비(안 제4조 제2항 2호)

다. 위원장 및 간사사고 시 직무대리자를 최다선, 연장자 의원 순으로 변경(안 제12조 제4항)

5. 처리결과

○ 제25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8. 27.)에서 원안가결

(48)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발의안

1. 제 출 일 : 2018. 9.

2. 제 출 자 : 문춘단, 배홍준,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김창주, 김보미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강진군의회 의원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함임.

4. 주요내용

- 출석일시 : 2018. 9. 12.(수) / 2018. 9. 14.(금)
- 출석장소 : 강진군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자 :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
- 출석요구 사유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끝.

5. 처리결과

○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 9. 5.)에서 원안가결

(49)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문춘단 의원 외 7

3. 제안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대통령령인「지방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진군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한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마.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제20조)
바. 행동강령 조례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타사항(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5. 처리결과

○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9. 12.)에서 원안가결

(50) 강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김명희, 김창주, 김보미

3. 제안이유

군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의원 순금배지 제작을 지양하고 도금 배지 제작에 관한 제식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명칭의 괄호안 내용 정비(안 제1조 ~ 제3조)
나. 도금 배지 제작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정비 및 삭제(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제목 개정(안 제7조)

라. 배지의 재료 및 제작방법 정비([별표 2])

5. 처리결과

○ 제25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9. 12.)에서 원안가결

(51)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7.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무료임대 다가구 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입주대상자 확대 및 임대료, 심사기준(2017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확대(안 제3조)

나. 임대료 및 본인 부담금 등 정비(안 제7조)

다. 선정기준 배점표 별표 5 수정, 추가(별지)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2)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ㅇ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우회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ㅇ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중 군수가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향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삭제함.

4. 주요내용

ㅇ 제6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제2항 3호 삭제

5. 처리결과

ㅇ 제2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복지위원회(2018. 11. 13.)에서 수정가결

(53)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회

3. 제안이유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위해 조례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강진군 향우회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제2조)

○ 강진군 향우회 교류사업 활성화 시책 사업 지원근거 마련(제6조)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수정가결

(54)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축사육시설에서 분리 정의함으로써, 제한 구역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고 추가 설치 가능하게 하여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생활용수의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가축사육에 의한 오염지역을 상·하류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상류를 기준으로 거리 적용됨

다. 급수시설에 대한 보호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축산업의 지속운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구분(안 제2조제3호)

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다. 가축사육 절대제한구역 정의 규정(안 제3조제2항제3호)
라. 가축사육 상대제한구역 정의 문구 수정(안제3조제3항)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5) 강진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9.

2. 제 출 자 : 의성식 의장 외 2

3.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안 제4조의2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라남도 주택 조례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항목 신설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안 제4조의2 제2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95조제8항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항목 신설함.

5. 처리결과

ㅇ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6) 강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9.

2. 제 출 자 : 김명희 의원 외 2

3.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보조금 지원(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결과보고(안 제4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5조)

5. 처리결과

ㅇ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7)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9.

2. 제 출 자 : 김보미 의원 외 2

3. 제안이유

강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명 명시(안 제1조)

나.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다. 노인단체 지원 및 범위(안 제14조)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8)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나.「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의2) : 2023년 12월 31일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59) 강진군 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법제처 발굴 법령위임 필수조례 및 「조례규제 개선 과제 50선」를 개정,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과 기업 등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일괄개정 조례 현황

-「강진군 주차장 조례」외 11개 조례

○ 정비내용

가. 상위법령 미반영 제·개정사항 정비

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라. 과도한 규제 등 기타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안 내용	담당부서
공정위 개선 사항	강진군 주차장 조례	제8조제1항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차별규제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기준 삭제	안전재난 교통과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안 내용	담당부서
법제처 법령위임 필수조례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1 (신설)	상위법령에 맞게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	기획 홍보실
법제처 조례개선 과제 50선-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법률과 다른 사유(실적보고서 미제출)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기획 홍보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규정 중 상위법령과 다른 불명확한 사유 삭제	
법제처 50선-2	강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갱신방법과 절차를 수정	주민 복지실
법제처 50선-3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3호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이내) 명시	친환경 농업과
법제처 50선-4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상위법령에 맞게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	환경 축산과
법제처 50선-5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상위법령과 다른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의무 규정 삭제	건설과
법제처 50선-6	강진군 건축 조례	규정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주민에게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혜택 확대	민원 봉사과
법제처 50선-7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 확대	세무 회계과

구분	조례명	조항	개정안 내용	담당부서
법제처 50선-8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1항~제5항,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매각대금, 교환차금, 대부료 등 분할납부 시 상위법령에 맞게 이자율 조정	세무 회계과
법제처 50선-9	강진군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없음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이내) 명시	세무 회계과
법제처 50선-10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불명확한 사유를 삭제	총무과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0)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기금출납원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한다.

4. 주요내용

가. 기금출납원을 담당실무자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안 3조

나. 의료급여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안 8조)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1)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4.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액 증액(안 제11조)

- 사망위로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2) 강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안 제3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영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안 제4조, 제5조)

-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 그 밖의 수입 등
-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라.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안 제7조)

- 예산편성, 결산,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사용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3)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정의)

4. 주요내용

가.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호)

나. 강진군 일자리창출 추진사업 결정(안 제7조)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다. 강진군 일자리창출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라. 강진군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등(안 제18조~제30조)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4)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적용과 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수수료 무료

- 개정 전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당 수수료 800원
- 개정 후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당 수수료 800원
  단,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발급 수수료 무료(신설)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요율표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완화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무료

- 상위법령(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정비
  〔별표1〕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요율표 개정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5)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제 출 일 : 2018. 12.

2. 제 출 자 : 농업경제위원회

3. 제안이유

○ 2002년 요금인상 이후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

으로 재정적자 증가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성을 제고하고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안 제36조(요금 등 의 감면) 제1항 11호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한된 가구 에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강진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1항 11호

- “주소를 두고 있는”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경제위원회(2018. 12. 20.)에서 수정가결

(66) 강진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2002년 요금인상 이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수돗물의 생산 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증가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합리성을 제고하고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상수도요금 인상(2년간 매년 평균 22.8%) (별표 2)
○ 업종별 구분에서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일원화(별표 2)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감면규정 삭제(안 36조)
○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감면규정 확대(안 제24조, 제36)
○ 출산가구 및 관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감면규정 신설(안 제36조)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수정가결

(67)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문춘단 의원 외 2명

3. 제안이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관광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해설사의 직무 (안 제4조)
나. 해설사 운영 등 (안 제6조)
다. 운영 지원 등(안 제7조)
○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입장료 등 면제

라. 교육 등 (안 제 8조)
마. 해설사의 배치 (안 제9조)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68)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출 일 : 2018. 12.

2. 제 출 자 : 윤기현 의원 외 2명

3. 제안이유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018. 11. 29일자 강진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구금 상태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안 제2조 3항)
나. 2019년 월정수당은 19,720,000원으로 함 (별표 4)
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 (별표 4)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예산안 등 일반의안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 제 출 일 : 2018. 5. 3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2017회계연도 강진군 재정운용 실태를 종합 결산하여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ㅇ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ㅇ 기금 결산보고
ㅇ 채권현재액, 채무 결산보고
ㅇ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
ㅇ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등
ㅇ 제무제표

5. 처리결과

ㅇ 제2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9. 12.)에서 원안가결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제 출 일 : 2018. 5. 3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함.

4. 주요내용

ㅇ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ㅇ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5. 처리결과

ㅇ 제2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 9. 12.)에서 원안가결

(3) 2018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1. 제 출 일 : 2018. 8. 29.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실과소	출연기관	지원근거	비 고 (예산신청액)※참고
지역 개발과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71,000 (군비부담분)

※ 지방의회 의결 범위 :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 승인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5. 처리결과

○ 제25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8. 9. 14.)에서 원안가결

(4)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제 출 일 : 2018. 8. 29.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증감률)
계	418,852,564	398,748,306	20,104,258	5.04%

회 계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증감률)
일 반 회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특 별 회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나.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증감률)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지방세 수입	13,200,000	13,200,000	0	0%
세 외 수 입	14,051,078	13,869,709	181,369	1.31%
지방교부세	192,332,930	185,017,250	7,315,680	3.95%
조정교부금등	4,500,000	4,500,000	0	0.00%
보조금	143,001,163	139,921,719	3,079,444	2.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91,296	33,000,000	8,591,296	26.03%

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증감률)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세 외 수 입	1,895,259	1,849,879	45,380	2.45%
보조금	1,087,120	1,113,377	△-26,257	△-2.3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93,718	6,276,372	917,346	14.62%

라.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 (증감률)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일반 공공행정	24,617,684	18,963,879	5,653,805	29.81%
공공질서및안전	3,234,131	3,038,993	195,138	6.42%
교육	2,606,296	2,606,296	0	0.00%
문 화 및 관 광	49,513,632	47,083,242	2,430,390	5.16%
환경보호	23,084,663	21,759,421	1,325,242	6.09%
사회복지	68,030,984	66,702,262	1,328,722	1.99%
보 건	6,453,854	6,606,122	△-152,268	△-2.30%
농림 해양 수산	125,967,523	124,528,604	1,438,919	1.16%
산업 · 중소기업	5,326,758	4,192,345	1,134,413	27.06%
수 송 및 교 통	8,637,832	8,372,220	265,612	3.17%
국토및지역개발	31,928,314	27,471,702	4,456,612	16.22%
예 비 비	4,456,986	4,298,220	158,766	3.69%
기타	54,817,810	53,885,372	932,438	1.73%

마.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환경보호	3,903,585	3,125,989	777,596	24.88%
사회복지	2,102,187	2,210,639	△-108,452	△-4.91%
농림해양수산	3,656,267	3,413,000	243,267	7.13%
산업 · 중소기업	0	0	0	0.00%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수 송 및 교 통	514,058	490,000	24,058	4.91%
국토 및 지역개발	0	0	0	0.00%
기 타	0	0	0	0.00%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5)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규약안

1. 제 출 일 : 2018. 8.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적법한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을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라고 정함.(안 제1조)

나. 협의회의 운영 목적은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관광기반조성과 공동협력지원 등 회원 상호간 관광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다.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구에 두고, 사무지원은 시·군·구의 해당업무의 주무담당(주무계장)으로 함.(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주요사업은 회원 상호간 방문객에 대한 할인혜택 부여, 회원간 관광홍

보 교류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의 공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기타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 지원사업 수행(안 제4조)

라. 구성은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으로 하며, 회원은 각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함.(안 제5조)

마.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과 간사 1명을 두되,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간사는 회장의 소속 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함. (안 제6조)

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회의장소는 대구 중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정하되 회원간 협의하에 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협의회 회의운영 경비는 회의주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분담함.(안 제14조)

5. 처리결과

○ 제25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 11. 14.)에서 원안가결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 제 출 일 : 2018. 11.

2. 제 출 자 : 문춘단의원 외5

3. 제안이유

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나.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감사기간 : 2018. 11. 26. ~ 2018. 12. 12.(17일간)

나. 장소 : 행정사무감사장 및 사업장 등

다. 대상기관 및 사무 :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과 같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라. 감사방법 :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마.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일괄작성하고 행정복지위원장이 일괄 보고하여 채택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8. 11. 23.)에서 원안가결

(7) 2019년 출연금 지원 계획안

1. 제 출 일 : 2018. 11. 16.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2019년 강진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실과소	출연 기관	지원 근거	사업비	비고
합계	6개기관/6개사업		998,009	

실과소	출연 기관	지원 근거	사업비	비고
기획홍보실	한국진흥지역재단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	5,500	
일자리 창출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300,000	
관광과	(재)강진군 문화관광재단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360,000	
문화 예술과	재단법인남도 음식문화큰잔치	전라남도 재단법인남도음식문화큰잔치설립및운영조례	300,000	
세무회계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 기방세기본법시행령	2,509	
총무과	강진군민장학재단	재단법인강진군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조례	30,000	

※ 지방의회 의결 범위 :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 승인 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3.)에서 원안가결

(8)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1. 제 출 일 : 2018. 11. 16.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 중앙정부·도의 시군 연계 협력사업 장려 및 지원 방침에 따라 인접성, 동일 선거구를 배경으로 한 득량만강진만권 연안 4개 지자체(고흥, 보성, 장흥, 강진)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행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 추진
나. 제2조(명칭) : 득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다. 제3조(구성) :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라. 제5조(조직) : 협의회 8명(군수, 군의장), 자문위원 4 ~ 8명
마. 제6조(사무처리) : 연계사업 등 의결
바. 제7조(회의) : 정기회의(반기별), 임시회의 개최
사.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 실무협의회 조직 및 운영방법 등
아. 제12조(경비부담 및 집행) : 부담금 각출 및 경비집행 사항

5. 처리결과

○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3.)에서 원안가결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 출 일 : 2018. 12. 4.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가.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안)

○ 우리 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와

○ 성전면 환경산업단지 근무자들을 위한 배후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강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

○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강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국무총리산하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2018.08.31.)를통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

을 추진하고자 함.

다.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안)

○ 정부 주요정책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 센터 설치로 치매 예방, 치매조기진단,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등 운영하여 대민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비용 경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

4. 주요내용

가. 강진군 신규마을 조성사업

○ 위치 : 성전면 성전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4년)

○ 사 업 비 : 80억 원(국비 50%, 군비 50%)

- 토지매입 : 2019. 1. ~ 2019. 4.

○ 사업내용

- 토지매입 면적 및 기준금액 : 22필지 39,800㎡ / 151,286천 원
- 부지조성 및 단독주택형 공공임대주택 30가구
  (′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예정)

나. 강진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명칭 : 강진읍 위대한 유산

○ 위치 : 강진읍 동성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

○ 총사업비 : 15,500백만 원(국비 9,300 / 도비 1,550 / 군비 4,650)

○ 사업내용

- 토지매입 면적 및 기준금액 : 16필지 4,759㎡ / 974,437천 원
- 주 거 복 지 : 저층 노후 주거지 정비, 골목정원 조성, 청년창업 주택, 담장 정비
- 사 회 통합 : 주민 플랫폼, 주민역량강화, 골목 여행길 조성
- 도시경쟁력 : 스마트 보안등,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등
- 일자리창출 : 게스트하우스 조직 구성 및 운영, 청년 안테나숍 개발 등

다. 강진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안)

ㅇ 사 업 명 : 강진군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
ㅇ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ㅇ 사업기간 : 2018. 11. ~ 2019. 6.
ㅇ 사 업 비 : 1,127백만 원(기 419,도 52,군 656)
ㅇ 사 업 량 : 399㎡(2층)
ㅇ 주요시설 : 진단검사실, 가족카페, 상담실 등

5. 처리결과
ㅇ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2. 13.)에서 원안가결

(10)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

1. 제 출 일 : 2018. 12. 18.

2. 제 출 자 : 김창주 의원 외 7

3. 제안이유
ㅇ 인건비, 농자재, 농기계 가격 등 경영비는 매년 치솟고 있으며, 쌀 농업은 직불금 소득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목표가격은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쌀 직불금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ㅇ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쌀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결의문(안)

5. 처리결과
ㅇ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8. 12. 21.)에서 원안가결

(11)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제 출 일 : 2017. 12. 6.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을 편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4. 주요내용

○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25,111,385**	**409,992,009**	**15,119,376**	**3.69%**
일 반 회 계	415,136,575	400,041,275	15,095,300	3.77%
특 별 회 계	9,974,810	9,950,734	24,076	0.24%

○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15,136,575**	**400,041,275**	**15,095,300**	**3.77%**
지방세 수입	13,510,000	12,510,000	1,000,000	7.99%
세 외 수 입	14,949,912	9,330,488	5,619,424	60.23%
지방교부세	198,071,527	191,359,000	6,712,527	3.51%
조정교부금등	4,550,000	4,050,000	500,000	12.35%
보조금	136,974,368	137,148,576	△174,208	△0.1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7,080,768	45,643,211	1,437,557	3.15%

○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9,974,810**	**9,950,734**	**24,076**	**0.24%**
세 외 수 입	1,920,182	1,920,182	0	0.00%
보조금	1,712,547	1,688,549	23,998	1.4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42,081	6,342,003	78	0.00%

○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15,136,575**	**400,041,275**	**15,095,300**	**3.77%**
일반 공공행정	32,342,911	31,062,280	1,280,631	4.12%
공공질서및안전	2,971,094	1,607,626	1,363,468	84.81%
교육	2,250,773	2,341,360	△90,587	△3.87%
문 화 및 관 광	52,151,489	52,139,172	12,317	0.02%
환경보호	25,268,789	25,386,407	△117,618	△0.46%
사회복지	62,003,351	63,922,576	△1,919,225	△3.00%
보 건	6,029,896	6,454,838	△424,942	△6.58%
농림 해양 수산	117,131,020	114,942,517	2,188,503	1.90%
산업 · 중소기업	4,770,320	4,713,188	57,132	1.21%
수 송 및 교 통	10,470,902	11,418,985	△948,083	△8.30%
국토및지역개발	28,463,986	28,566,975	△102,989	△0.63%
예 비 비	20,175,315	5,414,232	14,761,083	272.63%
기타	51,106,729	52,071,119	△964,390	△1.85%

○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9,974,810**	**9,950,734**	**24,076**	**0.24%**
환경보호	3,715,971	3,691,895	24,076	0.65%
사회복지	2,228,868	2,228,868	0	0.00%
농림해양수산	3,382,989	3,382,989	0	0.00%
산업 · 중소기업	22,178	22,178	0	0.00%
수 송 및 교 통	457,706	457,706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167,098	167,098	0	0.00%

○ 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6,077,541**	**5,735,197**	**342,344**	**5.97%**
세외수입	168,849	141,529	27,320	19.30%
보조금	206,100	206,100	0	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702,592	5,387,568	315,024	5.85%

○ 기금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능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6,077,541**	**5,735,197**	**342,344**	**5.97%**
공공질서 및 안전	1,785,269	1,785,269	0	7.85%
문 화 및 관 광	1,370,400	1,370,400	0	0.00%
환경 보호	175,193	132,849	42,344	31.87%
사회 복지	2,115,679	2,115,679	0	0.00%
보 건	281,000	281,000	0	0.00%
농업해양수산	350,000	50,000	300,000	600%

5. 처리결과

○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 12. 21.)에서 원안가결

(12) 2019년도 예산안

1. 제 출 일 : 2018. 11. 21.

2. 제 출 자 : 강진군수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337,461,821**	**333,304,000**	**4,157,821**	**1.25%**
일 반 회 계	328,447,900	324,064,372	4,383,528	1.35%
특 별 회 계	9,013,921	9,239,628	△-225,707	△-2.44%

나.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328,447,900**	**324,064,372**	**4,383,528**	**1.35%**
지방세 수입	10,300,000	13,200,000	△-2,900,000	△-21.97%
세 외 수 입	9,007,089	9,382,631	△-375,542	△-4.00%
지방교부세	160,500,000	154,500,000	6,000,000	3.88%
조정교부금등	4,500,000	4,500,000	0	0.00%
보조금	126,563,886	125,481,741	1,082,145	0.86%
보전수입 등및 내부거래	17,576,925	17,000,000	576,925	3.39%

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종 류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9,013,921**	**9,239,628**	**△-225,707**	**△-2.44%**
세 외 수 입	1,858,903	1,849,879	9,024	0.49%
보조금	1,389,192	1,113,377	275,815	24.7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65,826	6,276,372	△-510,546	△-8.13%

라.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328,447,900**	**324,064,372**	**4,383,528**	**1.35%**
일반 공공행정	20,764,761	16,108,117	4,656,644	28.91%
공공질서및안전	2,544,018	2,303,254	240,764	10.45%
교육	2,425,052	2,533,551	△-108,499	△-4.28%
문 화 및 관 광	28,963,876	29,488,744	△-524,868	△-1.78%
환경보호	21,786,272	15,657,039	6,129,233	39.15%
사회복지	64,609,844	63,588,491	1,021,353	1.61%
보 건	6,668,677	6,642,302	26,375	0.40%
농림 해양 수산	98,702,011	104,257,121	△-5,555,110	△-5.33%
산업 · 중소기업	2,242,281	1,454,867	787,414	54.12%
수 송 및 교 통	4,477,841	7,280,114	△-2,802,273	△-38.49%
국토및지역개발	14,860,207	17,224,517	△-2,364,310	△-13.73%
예 비 비	2,909,182	3,645,683	△-736,501	△-20.20%
기타	57,493,878	53,880,572	3,613,306	6.71%

마.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9,013,921**	**9,239,628**	**△-225,707**	**△-2.44%**
환경보호	3,188,807	3,125,989	62,818	2.01%
사회복지	2,031,371	2,210,639	△-179,268	△-8.11%

기 능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농림해양수산	3,277,243	3,413,000	△-135,757	△-3.98%
산업 · 중소기업	0	0	0	0.00%
수 송 및 교 통	516,500	490,000	26,500	5.41%
국토 및 지역개발	0	0	0	0.00%
기 타	0	0	0	0.00%

바. 2019년 기금운영 계획서

○ 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14,887,193**	**6,636,335**	**△8,250,858**	**124.33%**
세외수입	299,230	151,774	147,456	97.15%
보조금	6,100	6,100	0	0.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4,581,863	6,478,461	8,103,402	125.08%

○ 기금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기 능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고(증감률)
계	**14,842,193**	**6,636,335**	**△8,205,858**	**123.65%**
일반공공행정	8,614,750	1,000,000	7,614,750	761.48%
공공질서 및 안전	1,081,932	1,131,099	△-49,167	△-4.35%
문화 및 관광	1,335,983	1,350,082	△-14,099	△-1.04%
환경보호	206,991	153,561	53,430	34.79%
사회복지	2,228,423	2,166,163	62,260	2.87%
보건	312,631	285,430	27,201	9.53%
농림해양수산	1,061,483	550,000	511,483	93.00%

군정질문 · 답변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윤 기 현 의원

[질문] 강진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하여

[답변] 이승옥 군수

○ 강진산업단지는, 성전면 일대에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 공동시행으로 총 532억원을 투입, 655,267㎡(약 20만 평) 규모로, 2008년 사업 추진 이후 금년 2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진산단은, 2010년 8월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 협약에 따라 분양공고 3년 후 미분양 토지는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고, 미매입시 개발공사가 차입한 금리(3.47%)로 매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분양공고후 3년이 경과한 지난 해 7월 이후 개발공사측의 의무이행 촉구에 대해, 우리 군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고,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유치 곤란, 열악한 군 재정 등을 이유로 미분양 토지 일괄 매입이 곤란하다고 맞서며 지연손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 준공 당시까지 분양률은 18.8%로 지지부진하였지만, 민선7기 출범 후 군수와 전 공무원이 발벗고 나선 결과, 현재는 약 28%로 급상승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난 해 7월 부터 매월 약 1억 600만원이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은 향후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0년 보성 ~ 목포간 철도와 2023년 강진 ~ 광주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강진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유치 전담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군산하 전 공직자와 군민까지 포함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실과소, 읍면장까지 참여하는 기업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향우,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강진산단 100% 분양 조기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임기내에 '100% 분양' 성공의 열매로 군민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질문] 쓰레기 처리 관련하여

[답변] 이용현 환경축산과장

○ 청소 행정 등 시가지 청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랑생가 주차장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관하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쓰레기 집하장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해 본 결과, 관광버스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분리하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가고 또한 인근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 쓰레기 수거함 주변이 오히려 더 지저분해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기존 수거함도 일부 철거하는 실정도 있었습니다.

○ 영랑생가와 모란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의 쓰레기 불법 투기로 주민들의 불편과 깨끗한 강진이미지 실추 우려도 있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청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동빌라 건너편 쓰레기 방치 및 무단 투기에 대하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함은 물론 마을이장 등을 통하여 수거시간대 이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겠으며, 현수막과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무단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질문] 가로수 식재에 관하여
산림사업 수목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현재 강진군은 총 39개소 248km에 28,231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종류는 배롱나무, 가시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있습니다.
강진의 주요 관광 자원화된 가로수길은 성전 이팝나무길과 군동 벚나무길, 그리고 전라도 천년 가로수길로써 남포 자전거 도로에 식재된 구실잣밤나무를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 이 3군데의 가로수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6군데는 이름이나 이야기가 없는 그저 가로수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윤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길에 이름을 붙이고, 스토리를 만들어 강진의 관광자원이 되는 가보고 싶은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간판 제작이나 수목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국도 23호선은 강진 ~ 마량 간 선형공사로 인해 가로수 부재상태입니다. 서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 23호선은 강진에서 마량까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이며 마량 놀토수산시장, 가우도 등 강진관광명소를 잇는 주요도로입니다. 이에, 추후 도로 선형공사가 끝난 후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이 식재 될 가로수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조성될 국도 23호선 내 가로수는 그저 수목 식재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여 강진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식재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 수목 선정 및 국유림 면적과 사업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림 면적은 28,709ha로 국유림이 3,367ha, 공유림 1,824ha, 사유림 23,518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3,229ha로 강진읍 서기산 313ha, 칠량면 삼흥리 395ha의 대규모 국유림과 그 외 지역별 소규모 필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산림은 임산물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식재수목 선정에 있어서도 생산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수목으로 식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편백 등 경제

수종조림 60ha 3억 2,000만 원 사업비와 단기소득 임산물인 황칠, 헛개, 두릅, 밤나무, 개복숭아 등 산주의 의견을 반영한 특용수 조림 40ha 2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 임업인들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생육 가능하면서 임업dls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 내 식재 유실수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지방도 829호선 까치내재 터널에 관하여

[답변] 황오연 건설과장

○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는 2009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 2월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장래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4월 작천·병영·옴천 주민 1,724명 서명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강진군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수차례 도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건의 방문결과, 2018년에 확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에 설계완료지구 사업 우선순위 3순위에 반영되었습니다.

○ 까치내재 터널 조기 착공은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도청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하였고 지난 9월 7일 김영록 도지사님이 강진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지역의 현안문제

인 만큼 조기 착공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 두 분에게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윤기현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동면 파산리에서,강진읍 향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함으로써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하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군에서는 강진읍 향교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97필지 중 30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1.32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남은 필지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9년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장기주차에 관하여

[답변]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

○ 공영주차장 일부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강진읍 시가지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인근 상가운영자나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해 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장기주차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장기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소유자들을 파악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단방치 차량을 제외하고 강제 출고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전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유료화로 운영 중인 아트홀 유료주차장의 사례로 볼 때 최초 1시간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의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하고 월정액 주차자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많은 주차장에 한해 저렴한 요금으로 유료화하여 운영

하는 것도 장기 주차 및 주차난 해결에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되어 유료화 추진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장기주차 단속반을 편성하여 장기 주차 중인 차량의 소유지를 파악하여 유선 및 우편으로 장기 주차의 문제점을 적극 안내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영랑생가 입구 사거리 주정차 정비에 관하여

[답변] 세무회계과장 최종열

○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을 탐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퇴근시간대 통행 차량과 섞여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영랑생가 주차장을 2층 주차장으로 신축하여 1층은 버스 전용, 2층은 승용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및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설치된 영랑생가 주차장은 관광객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대형버스 5대 승용차 20여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랑생가 2층 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는 영랑생가 초입에 2층 높이 4m철재 구조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영랑생가 주변 경관을 해쳐 영랑생가를 찾는 감성여행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1층을 버스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 기둥 등 구조물이 차량 회전 장애로 대형버스 진출입이 어렵고, 실내 어두운 공간에 대형버스 주변으로 관광객이 이동할 경우 대형버스는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해 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 이에 따른 대안으로 (구)관사 주변에 29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세무서 뒷등에 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직원주차는 이곳으로 유도하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영랑생가 주변 주차공간은 관광객과 민원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청 앞 문화관광재단 사무실과 과거 드림스타트 공간에 현재 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을 군청 방문객과 민원인의 주차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명 희 의원

[질문] 서기산 편백 숲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관련하여

[답변] 이승옥 군수

○ 첫 번째, 서기산 편백 숲 개발방안입니다. 흔히들 '아마존의 밀림을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숲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도 편백나무로 울창한 숲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김기운 회장 개인 소유의 칠량 초당림이고, 또 한 곳은 산림청 소유 국유림 강진읍 서기산 편백 숲입니다. 서기산 편백 숲은, 지난해 8월 산림청 지정, '전국 10대 명품숲'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 이 곳에는, 삼나무, 편백나무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고, 약 20km의 임도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일반 등산객은 물론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명품 숲 지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개발과 숲 본연의 기능을 살린 보존방안을 마련,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산림청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었습니다.

○ 개인 소유인 칠량 초당림이, 강진군의 예산 지원 등을 전제로 한, 전면개방 요청에도, 여전히 극히 일부 개방만 허용하는 사유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산림청 소유의 서기산이 우리 군의 대표 숲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무기

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 진행상황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사유는 하나입니다. 노조에서 요구하는, 호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요구안이 우리 군 재정여건상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무직노조에서 요구하는, 공무원 9급의 기본급을 적용할 경우, 전남 22개 지자체 중 광양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됩니다.

○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로, 도내 시군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4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너무나 괴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호봉제 도입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도내 중상위권인 7 ~ 8위 수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직 노조에서는 광주권 수준의 임금협상을 요구하며 지난 3월부터 군청 정문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군청과 경찰서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로서 이 점에 대해 군민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일부 의원님과 업무협의 시, 그리고 의회업무보고시 질의답변을 통해 의원님들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팝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답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길은 성전 경포대 ~ 무위사를 잇는 약 7㎞ 구간에 900여 주의 이팝나무가 식재되어 봄이 되면 이팝나무 꽃을 보고자 모여드는 강진의 주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멋진 풍광을 지닌, 강진의 대표

적인 해안길입니다.

○ 이팝나무는 하얀 꽃이 멋스러운 거리를 만들고 여름에는 쉼터를 제공하며 가을에는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는 좋은 수종으로 강진의 대표적인 해안선과 접목시켰을 때 탄식을 자아낼만 하지만, 기존에 이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배롱나무, 개나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지의 토질 적합 여부, 바닷가에 면한 만큼 염도에 강한 수종인지 등 생육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군동 까치내재에 식재된 벚나무처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지역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혜의 명품 해안 가로수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까치내재터널 사업에 대하여

[답변] 황오연 건설과장

○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는 2009년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3년 2월 실시설계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지방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부적정이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장래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낮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군에서는, 2015년 4월 작천·병영·옴천 주민 1,724명 서명 받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강진군의회 의장님을 포함하여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수차례 도청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속적인 건의 방문결과, 2018년에 확정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관리계획에 설계완료지구 사업 우선순위 3순위에 반영되었습니다. 까치내재 터널 조기 착공은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후 도청 건설교통국장과 도로과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하였고 지난 9월 7일 김영록 도지사님이 강진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지역의 현안문제인 만큼 조기 착공해 주실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 두 분에게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기현 의원님, 김보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동면 파산리에서,강진읍 향교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함으로써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조기착공의 당위성을 강조하자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에서는 강진읍 향교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97필지 중 30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 1.32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남은 필지에 대한 보상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19년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빈집 문제에 대하여

[답변] 윤상숙 민원봉사과장

○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우리군 빈집정비 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8월 현재 조사 결과, 우리 군 빈집은 290동이며 올해는 동당 철거비 50만원을 지원하여 60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빈집 철거 시 슬레이트 처리비는 동당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외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빈집 철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농지나 대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귀농 귀촌 귀어에 대하여

[답변]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

○ 우리 군 귀농·귀촌·귀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김명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귀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 귀농·귀촌·귀어에 대한 계획으로 최근 군 단위 농촌지역 자치단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자체 마다 인구 유입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의 효율적인 대안으로 귀농·귀촌·귀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민선 7기 군정운영 방향에 발 맞추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서 귀농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조직개편을 통해 귀농업무를 전담할 귀농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귀농인을 전문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 창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등 “체류형 귀농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칠량면 구로마을에 위치한 강진군 귀농사관학교를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로 리모델링하여 기숙형 귀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경영임대 실습농장」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로부터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사업이 확정될 시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부지 내에 신규 농업인이 임차해 실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둘째, 향후 5년간 강진군 귀농·귀촌·귀어 예상 인원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 5년 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귀농 가구원 약 134명, 귀촌 가구원 약 979명이 강진군으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과거 5년 동안, 귀농 668명, 귀촌 4,896명의 인원이 전입하였으며 향후 강진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민 유치관련 사업을 통해 과거보다 많은 도시민이 강진군으로 귀농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셋째, 귀농·귀촌·귀어인과 정주민간 갈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과거 귀농인 전입 시 집들이 비용 지원 및 귀농·귀촌 감성화합마을 운영사업, 귀농인 행복입주 기념품 제작 지원사업, 농업인 학습단체와 귀농인협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우리 군에 정착한 다수의 귀농·귀촌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귀농·귀촌인들로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귀농인의 자격을 5~7년 사이로 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귀농인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은 강진군 전입 이후 3년 이내의 귀농인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주민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농업인 교육 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으며 귀농인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교육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정주민들로부터 역차별의 상실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 홍 준 의원

[질문] [질문] 인구감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답변]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

○ 우리 군은 1965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국 28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89개 지자체에 포함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서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청년정책팀'을 신설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통합지원 공모사업 국비 10억 원 예산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로 구성된 지역 활력 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해결은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 민선7기 이승옥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인구유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를 신설하고 그 과 내에 인구·청년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성전산단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투자유치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투자유치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문제 해결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대응정책 마련과 저출산 극복,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답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조례를 발의하여 수급불안 품목 재배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배홍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은 2015년 12월 28일 조례 제정 이후, 2017년에 3억 5,000만원, 금년에는 3억 원을 확보되어 총 6억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 2025년까지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기 위해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적립하기로 계획하였지만,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당초 계획대로 기금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완충장치로 생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립해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후 정부 농산물 수급 안정 제도와 일부 상충되는 품목을 조정하고 조례 명칭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이 현실에 맞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강진만 어패류 감소 대책과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 최근 고수온 및 폭염 등 기상 이변과 장흥댐 건설, 각종 간척 매립 등으로 강진만의 하상 갯벌층이 높아짐에 따라 어패류의 서식환경이 급변하여 자원량이 급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응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2억 2,0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수평수하식 참굴단지를 조성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였고, 꼬막 종패살포사업, 자연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모

○ 패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어업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진만에 적응이 빠르고 성장이 잘되는 농어, 감성돔, 뱀장어, 새우 등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내년에는 칠량 구로, 도암 만덕 어촌계 지선에 백합치패를 방류하여 다양한 어패류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류양식 종패살포사업에 대해서는 어업인의 부담 경감과 패류 양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50% 보조, 50% 자담의 사업 지원율을 70% 보조, 30% 자담으로 상향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진만의 어패류 생산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확대와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염시기에 개최되는 청자축제에 대하여

[답변] 최치현 문화예술과장

○ 청자축제 발전을 위해 배홍준 의원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46회 청자축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 수도 감소하고 청자판매액도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청자축제 개선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안과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청자업체, 군민, 공무원, 축제추진위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시기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축제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0월 4일 축제 개최 시기에 따른 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축제전문가, 청자업체, 축제추진위원, 군민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군민이 원하는 시기로 축제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

○ 청년 농업인과 청년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과제의 세부실천 과제로 선정되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은 초기 자본의 부족 및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형 후계 농업인 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등 총 1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의 조기 영농 정착과 초기 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 및 창업 농업인의 요구도가 많은 작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및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영농 승계 청년 농업인 육성과 4-H 회원 자립기반 구축사업, 맞춤형 과제 지원 및 청년 농업인 단계별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업 농촌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에서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 순 선 의원

[질문] 국도 23호선 강진~마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성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하여

[답변] 이승옥 군수

○ 국도23호선은, 청자박물관, 가우도, 마량항 등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와 신마항뿐만 아니라, 연륙·연도교사업으로 완도읍과도 연결되는 인적, 물적 교류의 핵심 기간도로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선 확포장공사로 계획하였으나, 그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그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국비 554억 원을 투입, 18.5km에 대해 2차로 선형개량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8월 말 기준 약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4차선 확포장사업실현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선 확포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공사가 중지되면, 선형개량공사 마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형개량 공사로 인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등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지역이미지 훼손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군동 삼신 ~ 칠량 영복간 5.9㎞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4차선 확포장을 해 주도록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회 의원실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할 '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전 구간에 대한 4차선 확포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은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강진산업단지는, 성전면 일대에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 공동시행으로 총 532억원을 투입, 655,267㎡(약 20만 평) 규모로, 2008년 사업 추진 이후 금년 2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진산단은, 2010년 8월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공동이행협약에 따라 분양공고 3년 후 미분양 토지는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고, 미매입시 개발공사가 차입한 금리(3.47%)로 매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분양공고후 3년이 경과한 지난 해 7월 이후 개발공사측의 의무이행 촉구에 대해, 우리 군은 조성공사가 진행중이고,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유치 곤란, 열악한 군 재정 등을 이유로 미분양 토지 일괄 매입이 곤란하다고 맞서며 지연손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2월 준공 당시까지 분양률은 18.8%로 지지부진하였지만, 민선7기 출범 후 군수와 전 공무원이 발벗고 나선 결과, 현재는 약 28%로 급상승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난 해 7월 부터 매월 약 1억 600만원이 발생했던 지연손해금은 향후 투자유치 결과에 따라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0년 보성 ~ 목포간 철도와 2023년 강진 ~ 광주 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강진군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무엇보다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투자유치 전담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군산하 전 공직자와

군민까지 포함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실과소, 읍면장까지 참여하는 기업유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유치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 군민과 향우, 군 산하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신다면 강진산단 100% 분양 조기 실현은 가능할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임기내에 '100% 분양' 성공의 열매로 군민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질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 임채용 일자리창출과장

○ 우리 군 외국인 등록 현황은 2018년 8월말 기준 총462명이며, 이 중 고용허가제를 통해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203명으로 비전문취업등록 191명, 방문취업등록 인원이 12명입니다.

○ 이처럼 취업 목적으로 등록된 203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과 사업주의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발생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하지만 우리 군도 식당 등 서비스업, 특용작물 재배단지, 양어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결혼 목적으로 등록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등을 고용하여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법 불이행, 내·외국인 간 일자리 갈등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3D 산업현장에서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매우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으로 오히려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과 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세부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농업분야 시책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

○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고민하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순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벼 무논점파와 연 재배 추진사항과 예산 투입,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 무논점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벼 무논점파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여 전용직파기 33대를 2015년과 2016년까지 4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부터는 전용직파기 지원을 중단하고 희망 농가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전용비료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배 면적은 2015년 235ha, 2016년 613ha, 2017년 428ha, 2018년 254ha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무논점파 농법은 모판을 구입하여 모내기를 하는 농가의 경우 무논점파를 할 경우, 생산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앵미 발생과 제초작업 물관리가 관행농법보다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벼 무논점파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 지도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 재배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 재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 재배사업은 지난 2015년 쌀값 하락에 따른 벼 대체품목으로 논 형태를 유지하면서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여 2017년 현재 49농가 29.1ha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3.8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자가 수확을 위한 연근 수확기 4대를 지원하여 총 7억 1,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6년까지는 연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위탁 및 자가 수확하여 개별 유통 하였으나, 작년 6월부터 연공선회와 관내 고마미지 영농법인간 협약을 체결하여 식재 전 면적에 대한 수확·유통을 전담하고 있어 향후 수확, 유통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연근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 재배 여건, 작황에 따라 수량 차이가 심하고, 위탁 및 자가수확 판매 여부에 따라 농가 수취 가격에 큰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벼 대비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가수확 판매 했을 경우 약 1.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벼 대체품목으로 각광 받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은 하락 추세이고 저장과 판매가 쉽지 않는 품목입니다.

○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득 하락 등 문제점이 있으나,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식재 다음 해부터는 노동력과 농자재 투입이 대폭 줄어들고, 연 잎·연실 등 다양한 소득 기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노동력 확보와 판매를 염두 해 두고 생산할 경우, 생산농업인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 현재 재배 의향 농가는 상당수 있으나 앞으로는 수확 및 유통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고 현재 생연근 위주의 단순 유통구조이나 다양한 가공품 개발 등 상품화 추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이용현 환경축산과장

○ 우리 군 축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부에서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의 준비기간으로 3년을 유예시켜 2018년 3월 24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각종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가축분뇨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간 처리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이 9월 27일 종료됩니다.

○ 질문하신 내용 중 주민 3명의 확인서를 요구한 것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이며, 학교 주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 200m이내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유해시설은 “절대금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설치 불가토록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주민들의 축사 신규 설치나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축산단체 요구사항 16개 항목 중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무허가 적법화 시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부분만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규제사안으로 수용을 못하고 나머지 15개 항목은 우리 군에서 모두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 자체 도시계획심의회를 생략하여 적법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적법화 추진 현황은 465건이 접수되어 완료 166건, 측량 및 설계 중이 97건, 인·허가접수가 7건, 타인소유 토지 경계침범 등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195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추진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읍면을 방문하여 이행계획서를 현장에서 접수 받아 축사 폐쇄 명령 등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 등 불편함과 애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주요 국도변 가로수 식재상황에 대하여
강진만 생태복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바다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 국도 23호선은 강진에서 마량까지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이며 마량 놀토수산시장, 가우도 등 강진관광명소를 잇는 주요도로입니다. 이에, 추후 도로 선형공사가 끝난 후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군민들이 식재 될 가로수에 대해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새로 조성될 국도 23호선 내 가로수는 그저 수목 식재에 국한되지 않고 기후와 환경을 고려하여 강진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식재 수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사업 수목 선정 및 국유림 면적과 사업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내 산림 면적은 28,709ha로 국유림이 3,367ha, 공유림 1,824ha, 사유림 23,518ha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3,229ha로 강진읍 서기산 313ha, 칠량면 삼흥리 395ha의 대규모 국유림과 그 외 지역별 소규모 필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과거의 산림은 임산물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식재수목 선정에 있어서도 생산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수목으로 식재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편백 등 경제수종조림 60ha 3억 2,000만 원 사업비와 단기소득 임산물인 황칠, 헛개, 두릅, 밤나무, 개복숭아 등 산주의 의견을 반영한 특용수 조림 40ha 2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산림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 임업인들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과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지역에 생육 가능하면서 임업dls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산림 내 식재 유실수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강진만 환경 변화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을 대변하여 주신 서순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생태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진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판매된 이후 타 지역까지 바지락이 팔릴 정도로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봉황 어촌계 역실 등 및 용치등에서 생산된 바지락 종패를 채취하여 관내 타 양식장에 살포 2~3년 후 수확을 하면, 봉황어촌계를 비롯한 관내 바지락을 구입하고자 관외지역 문의가 빗발쳤으나 근래에는 장흥댐 건설, 간척사업, 바다 환경 변화로 패류 및 어류 생산량이 급감하여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 2011년 1월 13일 우리 군 어업인 1,322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장흥댐 건설로 인한 바지락 등 패류 폐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해양수산부는 강진만 해역환경변화 조사,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역비 각 50% 분담 조건으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17년 12월 22일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과 7억 9,200만원으로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체결, 2018년 1월 전남해양수산기술원 강진지원에서 착수보고회 개최 후 어촌계장, 수협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만에 조사정점 25개소를 선정, 사계절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해양환경,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현재 공정률 40%, 향후 2019년 5월 중에 중간용역보고를 개최, 용역이 완료되면 피해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 감정기관에 피해액을 감정평가하여 조속히 어업인에게 피해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용역 진행 중간에도 수시로 용역팀과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용역과 관련 어업인 요구가 있을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바다와 연접한 지역으로 해양환경

보호는 어업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해양오염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읍면 자율적으로 “바다 청소의 날”을 운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총 1억 6,000만 원, 금년 예산 대비 60% 증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암·신전 권역, 칠량·대구·마량권역의 다량 해양쓰레기 발생지 및 희망 어촌계를 해양쓰레기 없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권역별 선정 · 추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해양오염 예방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광 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답변] 허경자 관광과장

○ 가고 싶은 섬 가우도의 명품 섬 조성을 위하여 서순선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특색 있는 수종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섬 가우도 조성을 위하여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으로 38억 원 규모의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지난해까지 홍가시, 황금사철, 산철쭉 등 관목 9,400주와 산수국, 감국, 송엽국 등 지피류 35,200주 등을 식재하였으며 올해도 그늘 및 공원조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목 5,500여 주, 지피류 15,000여 주 식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가우도의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여 가우도를 사진에 담고 싶은 멋스러운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볼거리, 즐길거리 등 오감을 자극하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우도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 조성을 위해 황가오리 조형물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두꺼비 바위 같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섬 정상에 있는 청자타워까지 걸어서 오르기 힘든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섬 정상 전망이 좋은 곳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하여 사방으로 트인 강진만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순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섬 곳곳의 특색에 맞는 수종 식재와 재미있는 스토리 발굴 등 가우도를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섬으로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계절 힐링 할 수 있는 섬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창 주 의원

[질문] 군수님의 소통계획에 관하여
강진군 도서관 직원 운영에 대하여
행복한 강진만들기에 대하여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하여

[답변] 이승옥 군수

○ 첫 번째, 군수 공약사항 확정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수인 저의 소통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직전 정부의 소통의 부재에 기인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선7기로 접어든 강진군정에 있어서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와 군의회, 군민간 소통은 우리 몸의 혈액과도 같이, 지방자치제의 근간이고, 군민의 선택을 받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 등 선출직 주민대표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후, 군민들께 드린 약속에 대해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되뇌이며, 관련 공무원들과 강진군의 제반여건을 분석하고, 토의하고, 조정해서 지난 달 말, 7대 분야 40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 부터 세심하게 살펴보고,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행정조직개편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조직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공무원, 각 직렬별, 실과소별 대표 12명으로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 인구감소에 따른 군민정서를 반영,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국' 설치를 보류하였고, 최소한의 조직개편으로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재난교통과 등 '과' 명칭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는 등 양 수레바퀴에 비유되는, 집행부와 군의회가 상생하는 선진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두 번째, 사서직 추가 배치 등 도서관 조직 운영계획 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강진군립도서관은 5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물론, 13만여 권에 달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 강진군민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관계 법령상 강진군 도서관에는 10명의 사서직을 배치해야 합니다만, 현재는 3명의 사서직 공무원을 포함해 행정직, 청원경찰, 계약직 공무원 등 총 13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 사서직은 법령상 기준에 미달되지만 도서관 운영에는 애로가 없습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를 비롯해 도내 타 시군도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서직 인원은 모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공도서관은, 법령대로라면 39명의 사서직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재 8명의 사서직을 포함해 총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영암군은 7명, 고흥군은 3명, 함평군과 신안군 도서관에는 사서직 각 1명씩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또한, 고흥, 신안, 영암, 완도, 함평, 해남 등 6개 군은 도서관이 별도의 사업소가 아닌 군 본청 과에 소속한 팀으로, 6급 팀장이 관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군민의 사랑을 받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배출의 산실

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아가며 조직과 인력 운용, 시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복한 강진만들기 입니다. 행복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최종 욕구일 것입니다.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군정의 방향도 '군민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강진, 군민이 주인입니다'를 군정방침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등 군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지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ㅇ 또한, 소득수준, 세대, 성별 등 각종 계층간 상호 소통하고 화합하는 완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향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지역이미지 개선 운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와 참여는 덤으로 확보될 것이며, 군민들께서 느끼는 행복지수 또한 상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ㅇ 김창주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동학운동 등 강진 역사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 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의 역사 중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가슴 아프고 치욕적인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파악,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민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군수인 저도,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ㅇ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동학 농민혁명, 일제강점기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해 왔던 우리 군민들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 일을 훌륭하게 해주실 향토 사학자분들이 여러분 계십

니다. 이 분들과 함께 강진의 근·현대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도서관, 읍면사무소, 강진문화원 자료실 등에 기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질문] 태풍 피해조사와 농업직불금 신청 관련하여

[답변]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

○ 110년만의 폭염과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농가의 심각한 피해와 담당 공무원의 수고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신 김창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뭄 피해를 대비하여 금년에 관정 385공을 개발 중에 있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100만 원을 투입하여 스프링쿨러 945세트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현재 읍면에 총 2,514대의 스프링클러를 구비하여 무상 대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뭄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농업용수 개발과 장비를 확보하여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 우리 군에서는 1,410ha의 피해가 있었고,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 요령에 의거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농가는 피해조사와 전산 입력 후 피해 지수에 따라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김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 직불금을 매년 12월 초에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9월 하순에 지급하게 됨으로 현재 관련 공부 확인과 전산입력을 해야 되고, 태풍피해 조사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주하였습니다.

○ 읍면 산업부서 업무량 폭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읍면당 일시 사역인부를 30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하였고, 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도청에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군 총액인건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한해와 태풍 등 농업재해 피해조사와 보상에 차질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강진 건설에 대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황오연 건설과장

○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심지 내 공원조성과 골목길 정비, 노후담장정비,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선7기를 맞이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여,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창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군과 LH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 추진하는 사업으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 이후 2017년 10월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과, 감정평가액과의 차이가 많아 부지 매도를 거부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군에서는 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2020년까지 4개 지구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전 월남 LH리츠 시범사업 부지에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70세대를 조성하고, 군에서는 지구별 20세대씩 3개 지구 60세대를 조성하여 총 13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에 대상지가 확정된 강진 서산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 매입비로 5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지구는 2019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매입과 용도지역 변경 등, 전원마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택지를 분양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강진읍 춘곡지구 수몰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백남태 안전재난교통과장

○ 지난 6월 농경지 피해에 대한 춘곡지구 농민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6월 27일부터 28일간 약 200㎜ 집중 호우로 공사 중이던 춘곡천 교량 설치 공정 중 배수 단면 부족에 따른 배수 불량으로 덕남리 주변 농경지에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군은 이번 농경지 침수에 대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소홀하여 생긴 인재임을 통감하면서 군과 회사 측에서 피해를 입은 경작자 대표를 선정하여 침수 피해를 합동으로 조사하였으며, 피해 농민께서 너그럽게 보상에 협의해 주셔서 보상금을 회사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 또 침수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읍에서 피해조사를 하여 재해구호 및 재난구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배수 장애 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비상 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될 수 있는 배수장 펌프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춘곡천 교량공사 또한, 금년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중지하여 수확기가 끝난 후 시공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하는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및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도암 봉황마을 축종변경에 따른 돈사 신축 관련하여

[답변] 윤상숙 민원봉사과장

○ 강진군이 도암면 봉황리 소재 오리사를 돈사로 축종 변경 허가한 건에 대하여

도암면 김00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7년 11월 10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재결하였습니다.

ㅇㅇ 이후 2018년 1월 12일 축사 소유자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7월 12일에 승소하였고 우리 군은 이 사실을 항소기한이 지난 2018년 8월 8일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를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오리사를 증축 없이 돈사로 운영 시 허가면적 내에서 액비탱크 등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악취저감 등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ㅇ 다음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요양병원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 측은 동성리 주민과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의 반대 여론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군 입장에서 군민의 반대로 요양병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ㅇ

요양병원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군은 요양병원 측과 머리를 맞대고 현재 예정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대토를 물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 보 미 의원

[질문]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답변] 이승옥 군수

○ 강진군 청사가 신축된 지 40여 년이 지나 공무원은 물론 군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청사 신축의 시급성에 공감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월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에 따라, 금년 분 50억 원중 15억 원은 이미 확보하였고, 나머지 35억 원은 제3회 추경시 재정형편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10년간 매년 5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전라남도와 도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기금 관련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매년 예산편성시 군 재정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량항 개발 방향에 대하여

[답변] 김영기 해양산림과장

○ 북카페 외장 및 내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전기, 수도, 통신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북카페가 준공되면 민원부서와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마량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량항 해안은 그늘이 없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43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착공 2021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물양장 확장, 상방파제 보수 등 정비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수협위판장과 북카페, 대오도와 소오도 연결 데크시설 또한 마량항 정비사업 기간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대오도와 소오도 갯벌 내 사용하지 않는 수로관 및 어업자재보관 시설의 소유자 및 관계자 등을 파악, 즉시 정비하여 마량항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등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운영중인 놀토 수산시장과 연계시켜 수산업과 해양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답변] 황오연 건설과장

○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콘크리트의 삭막한 회색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의원님 뜻을 공감합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로폭 15m 이상의 간선도로에 대한, 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읍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 소방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폭 8m의 지선도로 개설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인도를 구분할 수 없어 가로수를 심어 녹지를 조성할 수 없는 여건으로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2018년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는 17개 노선으로, 도로폭 15m이상인 간선도로 5개 노선, 도로폭 8m미만 지선도로 1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폭 15m이상 간선도로, 강진의료원부터 3.1탑간, 동화주유소에서 3.1탑간, 교육청에서 아뜨리움APT노선은 인도를 분리하여 가로수 포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린빌라~동성리 회전교차로간, 중앙초 정문에서 신성사거리간은 인도설치를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도로폭 8m미만 지선도로 노선중, 서문안~CNS 3차, 다산청렴수련원 진입도로 2개 구간은 한쪽 부분이라도 인도를 분리 설치하고자 확장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계획은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가로수 등 녹지 공간 확보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소관부문 회부 예산안

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3월 15일 / 강진군수

나. 회부일자 : 2018년 3월 23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일자 : 2018년 3월 28일

라. 본회의 상정일 : 2018월 3월 29일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 원)

회 계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398,748,306**	**333,304,000**	**65,444,306**	**19.64%**
일 반 회 계	389,508,678	324,064,372	65,444,306	20.19%
특 별 회 계	9,239,628	9,239,628	0	0.00%

나.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 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389,508,678**	**324,064,372**	**65,444,306**	**20.19%**
지방세 수입	13,200,000	13,200,000	0	0%
세 외 수 입	13,869,709	9,382,631	4,487,078	47.82%
지방교부세	185,017,250	154,500,000	30,517,250	19.75%
조정교부금등	4,500,000	4,500,000	0	0.00%
보 조 금	139,921,719	125,481,741	14,439,978	11.5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000,000	17,000,000	16,000,000	94.12%

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 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9,239,628**	**9,239,628**	**0**	**0.00%**
세 외 수 입	1,849,879	1,849,879	0	0.00%
보 조 금	1,113,377	1,113,377	0	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276,372	6,276,372	0	0.00%

라.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 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389,508,678**	**324,064,372**	**65,444,306**	**20.19%**
일반 공공행정	19,080,479	16,140,917	2,939,562	18.21%
공공질서및안전	3,038,993	2,303,254	735,739	31.94%
교 육	2,606,296	2,533,551	72,745	2.87%
문 화 및 관 광	47,143,242	29,488,744	17,654,498	59.87%
환 경 보 호	21,759,421	15,657,039	6,102,382	38.98%
사 회 복 지	66,793,262	63,588,491	3,204,771	5.04%
보 건	6,621,122	6,642,302	△-21,180	-0.32%
농림 해양 수산	124,795,604	104,257,121	20,538,483	19.70%
산업 · 중소기업	4,192,345	1,559,067	2,633,278	168.90%
수 송 및 교 통	8,372,220	7,280,114	1,092,106	15.00%
국토및지역개발	27,471,702	17,087,517	10,384,185	60.77%
예 비 비	3,748,620	3,645,683	102,937	2.82%
기 타	53,885,372	53,880,572	4,800	0.01%

마.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 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9,239,628**	**9,239,628**	**0**	**0.00%**
환 경 보 호	3,125,989	3,125,989	0	0.00%
사 회 복 지	2,210,639	2,210,639	0	0.00%
농림해양수산	3,413,000	3,413,000	0	0.00%
산업 · 중소기업	0	0	0	0.00%
수 송 및 교 통	490,000	490,000	0	0.00%
국토 및 지역개발	0	0	0	0.00%
기 타	0	0	0	0.00%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사업,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 확대된 보조재원 대비 군비 부담률 등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력 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가. 심사기준

○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예년보다 대폭 확보함에 따른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숙원 사업과 기반 시설 정비사업,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와 '2018년 A로의 초대'등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음.

- ㅇ A로의 초대 옥외간판 설치는 2018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설치되어야 하나 1분기가 지난 시점에 설치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감소됨.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교체하는 것보다는 강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구적인 간판 설치가 필요함.
- ㅇ 가우도 유람선 계류장 제작 설치 사업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 하지않도록 해당 지역 어업인과 어촌계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할 것임.
- ㅇ 강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부지선정부터 계획적인 추진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ㅇ 청사건립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기금 조성 로드맵이 필요할 것임.
- ㅇ 상인역량강화 해외 현장학습 등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에 있어 자부담 비율을 타 사업과 어긋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의결사항

1) 일반회계 : 수정의결

□ 삭 감 액 : 549,600천 원

□ 삭감내역

- ㅇ 선진 우수 농업소득 현장(기관) 방문 4,500천 원 전액 삭감
- ㅇ 선진 우수 농업소득 현장(기관) 방문 36,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2018 A로의 초대 옥외간판 제작 60,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작천내기리노인대학 어르신 수송차량 구입 52,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교육 인솔 3,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해외교육 36,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발효음식 아카데미 운영 15,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한국예술종학학교 강진아트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6,100천 원 전액 삭감
- ㅇ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0,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이동식 작업대 구입 지원 32,000천 원 전액 삭감
- ㅇ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자재지원 100,000천 원 중 50,000천 원 삭감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449,640천 원 중 150,000천 원 삭감
○ 2018 A로의 초대 일반운영비 199,850천 원 중 60,000천 원 삭감
○ 도시소비자 초청 팸투어 30,000천 원 중 15,000천 원 삭감

2) 특별회계 : 원안의결

□ 세입예산 (단위 : 천 원)

회 계 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심 사 안		의결 예산액
		증 액	감 액	
총 계	**398,748,306**	**0**	**0**	**398,748,306**
일반회계	389,508,678	0	0	398,748,306
특별회계	9,239,628	0	0	9,239,628

□ 세출예산 (단위 : 천 원)

회계별	분 야 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안		의결 예산액
			증 액	감 액	
총 계	**19**	**398,748,306**			**398,748,306**
소계	13	389,508,678			389,508,678
일반회계	일반 공공행정	19,080,479		116,600	18,963,879
	공공질서및안전	3,038,993			3,038,993
	교 육	2,606,296			2,606,296
	문 화 및 관 광	47,143,242		60,000	47,083,242
	환 경 보 호	21,759,421			21,759,421
	사 회 복 지	66,793,262		91,000	66,702,262
	보 건	6,621,122		15,000	6,606,122
	농림 해양 수산	124,795,604		267,000	124,528,604
	산업 · 중소기업	4,192,345			4,192,345
	수 송 및 교 통	8,372,220			8,372,220
	국토및지역개발	27,471,702			27,471,702
	예 비 비	3,748,620	549,600		4,298,220
	기 타	53,885,372			53,885,372

회계별	분 야 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안		의결 예산액
			증 액	감 액	
소계	6	9,239,628			9,239,628
특별회계	환 경 보 호	3,125,989			3,125,989
	사 회 복 지	2,210,639			2,210,639
	농림해양수산	3,413,000			3,413,000
	산업 · 중소기업	0			0
	수 송 및 교 통	490,000			490,000
	국토 및 지역개발	0			0
	기 타	0			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1. 소관부문 회부 예산안

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30일 / 강진군수

나. 회부일자 : 2018년 9월 5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일자 : 2018년 9월 10일

라. 본회의 상정일 : 2018월 9월 14일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 원)

회 계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418,852,564**	**398,748,306**	**20,104,258**	**5.04%**
일 반 회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특 별 회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나.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 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지방세 수입	13,200,000	13,200,000	0	0%
세 외 수 입	14,051,078	13,869,709	181,369	1.31%
지방교부세	192,332,930	185,017,250	7,315,680	3.95%
조정교부금등	4,500,000	4,500,000	0	0.00%
보 조 금	143,001,163	139,921,719	3,079,444	2.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591,296	33,000,000	8,591,296	26.03%

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 원)

세 입 종 류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세 외 수 입	1,895,259	1,849,879	45,380	2.45%
보 조 금	1,087,120	1,113,377	△-26,257	△-2.3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93,718	6,276,372	917,346	14.62%

라.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 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408,676,467**	**389,508,678**	**19,167,789**	**4.92%**
일반 공공행정	24,617,684	18,963,879	5,653,805	29.81%
공공질서및안전	3,234,131	3,038,993	195,138	6.42%
교 육	2,606,296	2,606,296	0	0.00%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문화및관광	49,513,632	47,083,242	2,430,390	5.16%
환 경 보 호	23,084,663	21,759,421	1,325,242	6.09%
사 회 복 지	68,030,984	66,702,262	1,328,722	1.99%
보 건	6,453,854	6,606,122	△-152,268	△-2.30%
농림 해양 수산	125,967,523	124,528,604	1,438,919	1.16%
산업 · 중소기업	5,326,758	4,192,345	1,134,413	27.06%
수송및교통	8,637,832	8,372,220	265,612	3.17%
국토및지역개발	31,928,314	27,471,702	4,456,612	16.22%
예 비 비	4,456,986	4,298,220	158,766	3.69%
기 타	54,817,810	53,885,372	932,438	1.73%

마. 특별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 원)

기 능 별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비 고(증감률)
계	**10,176,097**	**9,239,628**	**936,469**	**10.14%**
환 경 보 호	3,903,585	3,125,989	777,596	24.88%
사 회 복 지	2,102,187	2,210,639	△-108,452	△-4.91%
농림해양수산	3,656,267	3,413,000	243,267	7.13%
산업 · 중소기업	0	0	0	0.00%
수송및교통	514,058	490,000	24,058	4.91%
국토 및 지역개발	0	0	0	0.00%
기 타	0	0	0	0.00%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사업, 당면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ㅇ 확대된 보조재원 대비 군비 부담률 등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활력 있는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가. 심사기준

ㅇ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ㅇ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른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음.

ㅇ 중앙로상가 특성화 첫걸음사업은 도태되고 있는 중앙로 상가를 강진의 특성에 맞는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임

ㅇ 강진읍시장 종합동 누수는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최대한 빠르게 보수하여야 하며 일시적 보수가 아닌 완전한 조치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

ㅇ 일자리 창출 관련 자문수당과 워크숍 사업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될 것임. 면밀한 검토 필요

ㅇ 이번 태풍으로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 피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임

ㅇ 농업 소득 배가 원년의 해 운영 및 3개 군 상생 협력 정책협의회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기 되는 것으로 생각됨.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도서관은 우천 시 누수 발생하여 보수가 시급하며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전반적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도서관 가건물의 경우 누수에

따른 비상벨 오작동과 문체부 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추후 예산에 반영하기 바람.

○ 보건소 예산의 경우 불용액 발생을 원인으로 목 변경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인금인상지원액을 제외한 용역부족분으로 계상한 예산액 일부 삭감.

○ 전남음악창작소 추후 재계약시 군비를 반영하는 만큼 강진군에서 권리 권한을 가지고 강진군의 의견 또는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함.

다. 의결사항

1) 일반회계 : 수정의결

□ 삭 감 액 : 311,958천 원

□ 삭감내역

○ 민선7기 일자리 발굴 자문수당 1,600천 원 전액 삭감

○ 민선7기 일자리 발굴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3,000천 원 전액 삭감

○ 제2회 강진 K-POP 콘서트 350,000천 원 중 군비 200,000천 원 삭감

○ 강진향교(유림회관) 시설 확충 100,000천 원 전액 삭감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93,910천 원 중 7,358천 원 삭감

2) 특별회계 : 원안의결

□ 세입예산 (단위 : 천 원)

회 계 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심 사 안		의결 예산액
		증 액	감 액	
총 계	**418,852,564**	**0**	**0**	**418,852,564**
일반회계	408,676,467	0	0	408,676,467
특별회계	10,176,097	0	0	10,176,097

□ 세출예산 (단위 : 천 원)

회계별	분 야 별	단체장제출 예 산 액	수 정 안		의결 예산액
			증 액	감 액	
총 계	**19**	**418,852,564**	**311,958**	**311,958**	**418,852,564**
소계	13	408,676,467	311,958	311,958	408,676,467
일반 회계	일반 공공행정	24,617,684	-	-	24,617,684
	공공질서 및 안전	3,234,131	-	-	3,234,131
	교 육	2,606,296	-	-	2,606,296
	문 화 및 관 광	49,513,632	-	300,000	49,513,632
	환 경 보 호	23,084,663	-	-	23,084,663
	사 회 복 지	68,030,984	-	-	68,030,984
	보 건	6,453,854	-	-	6,453,854
	농림 해양 수산	125,967,523	-	-	125,967,523
	산업 · 중소기업	5,326,758	-	4,600	5,326,758
	수 송 및 교 통	8,637,832	-	7,358	8,637,832
	국토및지역개발	31,928,314	-	-	31,928,314
	예 비 비	4,456,986	311,958	-	4,456,986
	기 타	54,817,810	-	-	54,817,810
소계	6	10,176,097	-	-	10,176,097
특별 회계	환 경 보 호	3,903,585	-	-	3,903,585
	사 회 복 지	2,102,187	-	-	2,102,187
	농림해양수산	3,656,267	-	-	3,656,267
	산업 · 중소기업	0	-	-	0
	수 송 및 교 통	514,058	-	-	514,058
	국토 및 지역개발	0	-	-	0
	기 타	0	-	-	0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보고서

Ⅰ. 결산심사의 규정 및 범위

1. 결산심사의 규정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2. 결산심사의 범위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사하게 됨.

Ⅱ. 세입 · 세출 결산

1. 총 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483,121,123,62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이보다 11,483,472,948원이 증가된 494,604,596,568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57,437,476,945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1,500,653,616원이 발생함.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계	**483,121,123,620**	**494,604,596,568**	**357,437,476,945**	**137,167,119,623**	**51,500,653,616**
일반회계	472,549,512,500	484,322,895,155	353,003,875,135	131,319,020,020	45,841,228,573
특별회계	10,571,611,120	10,281,701,413	4,433,601,810	5,848,099,603	5,659,425,043

▣ 세 입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483,121,123,620**	**497,161,286,011**	**494,604,596,568**	**318,116,950**	**2,238,572,490**
일반회계	472,549,512,500	486,734,015,628	484,322,895,155	318,116,950	2,093,003,520
특별회계	10,571,611,120	10,427,270,383	10,281,701,413	0	145,568,970

○ 세입결산서상 예산현액은 483,121,123,620원이며 징수결정액 497,161,286,011원 중에서 494,604,596,568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2,238,572,490원임.

▣ 세 출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83,121,123,620	357,437,476,945	83,540,577,390	6,014,801,717
일반회계	472,549,512,500	353,003,875,135	83,381,204,390	36,164,432.,975
특별회계	10,571,611,120	4,433,601,810	159,373,000	5,978,636,310

○ 세출결산서상 예산현액 483,121,123,620원 중에서, 지출액은 357,437,476,94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540,577,390원이며, 집행잔액은 6,014,801,717원임.

▣ 차인잔액 현황(세계잉여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37,167,119,623원으로 명시이월비 61,858,155,690원, 사고이월비 16,058,241,700원, 계속비이월 5,624,180,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25,888,617원, 순세계잉여금 51,500,653,616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분	세 계 잉여금	내 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37,167,119,623**	**61,858,155,690**	**16,058,241,700**	**5,624,180,000**	**2,125,888,617**	**51,500,653,616**
일반회계	131,319,020,020	61,698,782,690	16,058,241,700	5,624,180,000	2,096,587,057	45,841,228,573
특별회계	5,848,099,603	159,373,000	0	0	29,301,560	5,659,425,043

가. 일반회계

▣ 세 입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86,734,015,625원보다 2,411,120,470원이 적은 484,322,895,155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472,549,512,500**	**486,734,015,625**	**484,322,895,155**	**318,116,950**	**2,093,003,520**
지방세	소 계	13,510,000,000	17,477,447,560	16,724,099,870	130,493,800	622,853,890
	주 민 세	440,000,000	502,813,750	484,846,390	30,900	17,936,460
	재 산 세	2,070,000,000	2,246,627,160	2,143,503,400	25,410,780	77,712,980
	자 동 차 세	5,500,000,000	8,569,063,510	8,292,919,390	1,530,140	274,613,980
	담 배 소 비 세	2,100,000,000	2,307,050,290	2,307,050,290	0	0
	지 방 소 득 세	3,200,000,000	3,334,463,940	3,254,642,400	15,033,930	64,787,610
	지 난 년 도 수 입	200,000,000	517,428,910	241,138,000	88,488,050	187,802,860
세외수입	소 계	14,949,912,000	24,373,847,505	22,716,074,725	187,623,150	1470,149,630
	재 산 임 대 료	616,620,000	298,051,460	289,071,550	0	8,979,910
	사 용 료	1,115,442,000	1,317,908,100	1,302,771,580	0	15,136,520
	수 수 료 수 입	472,434,000	688,545,880	687,987,590	0	558,290
	사 업 수 입	655,904,000	812,621,710	812,582,530	0	39,180
	징수교부금수입	281,202,000	392,383,035	392,383,035	0	0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세외수입	이 자 수 입	1,210,284,000	1,256,786,400	1,256,786,400	0	0
	재 산 매 각 수 입	579,533,000	4,577,094,280	4,577,094,280	0	0
	부 담 금	140,675,000	159,981,280	144,196,230	0	15,785,05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46,260,000	497,056,980	327,117,250	0	169,939,730
	기 타 수 입	9,527,677,000	12,891,440,750	12,788,047,050	0	103,393,700
	지 난 년 도 수 입	103,881,000	1,481,977,630	138,037,230	187,623,150	1,156,317,250
지방교부세		198,071,527,000	201,635,795,010	201,635,795,010	0	0
조정교부금등		4,550,000,000	6,130,202,000	6,130,202,000	0	0
보조금		136,974,368,000	135,776,561,380	135,776,561,38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493,705,500	101,340,162,170	101,340,162,170	0	0

○ 미수납액 2,093,003,520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622,853,890원과 세외수입 1,470,149,630원이며, 지방세에서는 주민세17,936,460원, 재산세 77,712,980원, 자동차세 274,613,980원, 지방소득세 64,787,610원 이고, 지난년도수입 187,802,860원 등이 미납되었음.

○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8,979,910원, 사용료수입 15,136,520원, 수수료수입 558,290원, 사업수입 39,180원 등이 미납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부담금 15,785,05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69,939,730원, 기타수입 103,393,700원, 지난년도수입 1,156,317,250원이 미납되었음.

○ 지방세 수납액 16,724,099,870원의 주요세목별 수납액은

- 주 민 세 : 484,846,390원
- 재 산 세 : 2,143,503,400원
- 자동차세 : 8,292,919,390원
- 담배소비세 : 2,307,050,290원
- 지방소득세 : 3,254,642,400원
- 지난년도수입 : 241,138,000원

○ 세외수입 수납액은 22,716,074,725원으로

- 재산임대수입 : 289,071,550원
- 사용료 수입 : 1,302,771,580원
- 수수료 수입 : 687,987,590원
- 사업수입 : 812,582,530원
- 징수 교부금 : 392,383,035원
- 이자수입 : 1,256,786,400원

- 재산매각수입 : 4,577,094,280원 - 부 담 금 : 144,196,230원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327,117,250원
- 기타수입 : 12,788,047,050원 - 지난년도수입 : 138,037,230원

▣ 세 출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353,003,875,135원으로 기능별 지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원)

구 분	Y-1 지출액	Y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30,001,691,480**	**472,549,512,500**	**353,003,875,135**	**74.70**	**23,002,183,655**	**6.97**
일반공공행정	20,378,962,570	33,155,812,580	27,899,534,838	84.15	7,520,572,268	36.90
공공질서 및 안전	1,135,683,030	4,941,774,620	3,324,226,870	67.27	2,188,543,840	192.70
교 육	2,212,823,150	2,250,773,000	2,167,924,570	96.32	△44,898,580	△2.03
문화및관광	42,334,690,100	69,827,773,270	43,724,392,457	62.62	1,389,702,357	3.28
환경보호	26,753,658,600	30,597,215,750	21,997,945,470	71.89	△4,755,713,130	△17.77
사회복지	57,930,981,520	63,907,830,480	60,507,199,920	94.68	2,576,218,400	4.45
보 건	4,803,613,320	6,199,127,840	5,012,494,960	80.85	208,881,640	4.35
농림해양수산	97,511,749,018	136,569,963,110	104,106,519,350	76.23	6,594,770,332	6.76
산업 중소기업	1,565,465,920	5,283,536,550	2,317,246,760	43.85	751,780,840	48.02
수송 및 교통	8,559,104,130	16,022,984,040	9,992,907,860	62.37	1,433,803,730	16.75
국토 및 지역개발	19,272,464,545	35,047,004,260	22,176,895,640	63.28	2,904,431,095	15.07
예 비 비	0	17,638,988,000	0	0	0	0
기 타	47,542,495,577	51,106,729,000	49,776,586,440	97.40	2,234,090,863	4.70

○ 지출액은 353,003,875,1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0%로 통상적인 집행률 80.00%에는 약간 저조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81,204,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64%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36,164,432,9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로서 전년도 대비 0.65%가 증가 함

나. 특별회계

▣ 세 입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0,427,270,383원의 98.60%인 10,281,701,413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40%인 145,568,97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31,103,230원과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 54,359,800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단위 : 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결손액	미수납액
10,427,270,383	10,427,270,383	10,281,701,413	0	145,568,970

▣ 세 출

○ 특별회계 지출액은 4,433,601,81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41.9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373,000원이며, 불용액은 5,978,636,310원임

(단위 : 원)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0,571,611,120	4,433,601,810	159,373,000	5,978,636,310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계속비는 8건 5,624,180,000원이고, 명시이월은 233건 61,858,155,690원 이며, 사고이월은 147건 16,058,241,700원임.

○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5,655,015,620원이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은 2,673,576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2,797,939,850원 감소됨

3. 채권 결산

○ 채권은 당해연도에 419,468,670원이 발생하였고, 737,574,820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26,010,050원으로 전년도대비 6.57% 감소함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844,116,200**	**419,468,670**	**737,574,820**	**4,526,010,050**
일반회계	3,766,117,000	0	0	3,766,117,000
특별회계	1,077,999,200	419,468,670	737,574,820	759,893,050
기초생활보장기금	191,703,400	97,656,670	93,950,820	195,409,25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886,295,800	321,812,000	643,624,000	564,483,800

4. 채무 결산

○ 채무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써 당해연도 발생액 없이 693,600,000원을 상환하여 0원으로 확인됨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693,600,000**	**0**	**693,600,000**	**0**	**0**
일반회계	693,600,000	0	693,600,000	0	0

5. 기금 결산

○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79,060,839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408,72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액은 642,262,4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824,270원이 증가함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당해 연도말 현 재
		계	전입금	보조금	보조금		
합 계	**5,166,652,119**	**954,671,120**	**570,000,000**	**206,930,000**	**177,741,120**	**642,262,400**	**5,479,060,839**
체육진흥	743,086,742	9,573,180	0	0	9,573,180	10,000,000	742,659,922
문화예술진흥	581,888,966	35,912,690	30,000,000	0	5,912,690	70,000,000	547,801,656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출	당해 연도말 현 재
		계	전입금	보조금	보조금		
식품진흥	261,531,559	20,704,540	10,000,000	6,100,000	4,604,540	6,100,000	276,136,099
재해재난관리	1,445,368,998	341,314,490	130,000,000	200,830,000	10,484,490	411,311,210	1,375,372,278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	17,062,853	123,580,520	0	0	123,580,520	87,563,590	53,079,783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 지역주민지원	52,596,855	608,840	0	0	608,840	34,423,600	18,782,095
노인복지	2,065,116,146	72,975,910	50,000,000	0	22,975,910	22,864,000	2,115,228,056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지원기금	0	350,000,950	350,000,000	0	950	0	350,000,950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3,020,922,617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 중 공용재산이 39,590,599,970원 증가, 공공용재산은 13,916,037,006원 증가됨. 또한 공익사업인 강진~마량간 국도확포장편입부지와 사내간척지 토지 매각 등으로 일반재산이 485,714,359원이 감소되었음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390,519,804,742**	**57,998,472,358**	**4,977,549,741**	**1,443,540,727,359**
행정재산	소계	1,367,826,033,448	57,712,486,863	4,205,849,887	1,421,332,670,424
	공용 재산	97,992,736,857	39,626,814,500	36,214,530	137,583,336,827
	공공용재산	1,267,189,649,586	18,085,672,363	4,169,635,357	1,281,105,686,592
	기업용재산	567,575,155	0	0	567,575,155
	보존용재산	2,076,071,850	0	0	2,076,071,850
일반재산		22,693,771,294	285,985,495	771,699,854	22,208,056,935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 물품은 전년도 대비 431,361,513원이 증가한 6,147,830,513원이며, 주요 취득 품명은 차량 구입 등으로 900,677,480원이고, 매각처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등 469,315,967원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795	91	54	832
금 액	5,716,469,000	900,677,480	469,315,967	6,147,830,513

Ⅲ. 재무제표

○ 2017회계연도 강진군 재무제표 검사결과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진군의 총자산은 1조 7,329억원이고 총부채는 85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479억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676억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628억원이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49,313	8.62	117,296	7.02
투자자산	4,207	0.24	4,706	0.28
일반유형자산	56,428	3.26	52,007	3.11
주민편의시설	273,208	15.77	265,576	15.90
사회기반시설	1,247,934	72.01	1,228,441	73.55
기타비유동자산	1,842	0.11	2,073	0.12
자산총계	1,732,932	100.00	1,670,099	100
유동부채	10,897	12.82	13,172	15.19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74,088	87.18	73,561	84.81
부채총계	84,984	100.00	86,732	100
고정순자산	1,506,479	91.42	1,473,307	93.05
특정순자산	5,502	0.33	5,180	0.33
일반순자산	135,967	8.25	104,880	6.62
순자산총계	1,647,948	100.00	1,583,367	100
부채및순자산총계	1,732,932	-	1,670,099	-

Ⅳ. 성과보고서

ㅇ 강진군은 '열린 마음과 큰 생각으로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강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목표수 1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목표를 구축하여 운영함**

ㅇ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기획홍보실 등 11개 부서가 당초계획 지표수의 100%만 성과 달성하였고 주민복지실, 미래산업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고려청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등 9개 부서는 당초계획 지표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

Ⅴ. 전문위원 검토의견

ㅇ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전반적으로 의견을 같이함.**

ㅇ **다만,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7 회계연도 강진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의견서

Ⅰ. 강진군 재정의 현황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단위 : 천 원)

구분		Y-4	Y-3	Y-2	Y-1	Y
총계	세입(수입)	357,861,942	400,086,262	400,306,848	442,309,362	495,559,267
	세출(지출)	283,600,699	308,954,560	314,855,452	335,503,382	358,079,738
	결산상잉여금	74,261,243	91,131,702	85,451,396	106,805,980	137,479,528
일반회계	세 입	349,832,438	389,645,888	391,467,277	431,242,116	484,322,895
	세 출	279,087,017	301,621,456	310,325,051	330,001,691	353,003,875
	결산상잉여금	70,745,421	88,024,432	81,142,226	101,240,425	131,319,020
특별회계	세 입	7,427,288	9,825,475	8,259,888	10,573,481	10,281,701
	세 출	4,025,994	6,973,868	4,087,896	5,095,253	4,433,601
	결산상잉여금	3,401,294	2,851,607	4,171,992	5,478,228	5,848,099
기금	세 입	602,216	614,899	579,683	493,765	954,671
	세 출	487,688	359,236	442,505	406,438	642,262
	결산상잉여금	114,528	255,663	137,178	87,327	312,409

2017회계연도의 세입(수입)총계는 495,559,267천원으로 단순 비교상으로 보았을때 전년도의 세입(수입)총계 442,309,362천원 대비 12.04%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 세출(지출)총계는 전년대비 106.73%로써 358,079,738천원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7,479,528천원 이며, 전년 대비 28.7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당해연도에 9,574,804원으로 전년도

대비 9.28% 증가한 688,00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 천 원)

구 분	Y-4	Y-3	Y-2	Y-1	Y
계	**4,968,800**	**3,394,000**	**1,781,200**	**693,600**	**0**
공채	0	0	0	0	0
차입금	4,968,800	3,394,000	1,781,200	693,60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지방공기업 채무	0	0	0	0	0

연도별 채무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에 693,600천원을 상환하여, 군민 1인당 채무는 0원이며, 전년도 대비 0원을 줄여나간 것을 보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Ⅱ.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합 계	**483,121,123,620**	**494,604,596,568**	**357,437,476,945**	**137,167,119,623**
일반회계	472,549,512,500	484,322,895,155	353,003,875,135	131,319,020,020
특별회계	10,571,611,120	10,281,701,413	4,433,601,810	5,848,099,603

이 월 액 (D)					순세계잉여금 (E=C-D)
현년도 채무상황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집행잔액	
0	61,858,155,690	16,058,241,700	5,624,180,000	2,125,888,617	51,500,653,616
0	61,698,782,690	16,058,241,700	5,624,180,000	2,096,587,057	45,841,228,573
0	159,373,000	0	0	29,301,560	5,659,425,043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94,604,596,568원으로 예산현액 483,121,123,620원 대비 11,483,472,948원이 더 증가 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2.27%인 357,437,476,945원으로 전년대비 3.58% 감소 되었고, 차인잔액은 137,167,119,623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61,858,155,690원, 사고이월비 16,058,241,700원 및 계속비 5,624,180,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25,888,617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1,500,653,616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7% 증가 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472,549,512,500	486,734,015,625	484,322,895,155	318,116,950	2,093,003,520
결산확인액	472,549,512,500	486,734,015,625	484,322,895,155	318,116,950	2,093,003,52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의 개요

수납액 484,322,895,155원은 예산현액의 102.5%로써 11,773,382,65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로써 2,093,003,5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318,116,95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07%해당됩니다. 이는 2016 회계연도 불납결손액 378,597,290원 대비 60,480,340원이 감소 된 금액으로써 단순 대비 15.97%가 감소되었으며,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84,322,895,155	484,322,895,155	0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 원, %)

연도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불납결손액
Y	472,549,512,500	486,734,015,625	484,322,895,155	318,116,950	103.00	99.50	0.06
Y-1	416,588,741,100	433,563,837,090	431,242,116,320	378,597,290	104.07	99.46	0.08
증감	55,960,771,400	53,170,178,535	53,080,778,835	△60,480,340	△1.07	0.04	△0.02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472,549,512,500**	**486,734,015,625**	**484,322,895,155**	**318,116,950**	**2,093,003,520**
지방세	소 계	13,510,000,000	17,477,447,560	16,724,099,870	130,493,800	622,853,890
	주민세	440,000,000	502,813,750	484,846,390	30,900	17,936,460
	재산세	2,070,000,000	2,246,627,160	2,143,503,400	25,410,780	77,712,980
	자동차세	5,500,000,000	8,569,063,510	8,292,919,390	1,530,140	274,613,980
	담배소비세	2,100,000,000	2,307,050,290	2,307,050,290	0	0
	지방소득세	3,200,000,000	3,334,463,940	3,254,642,400	15,033,930	64,787,610
	지난년도수입	200,000,000	517,428,910	241,138,000	88,488,050	187,802,860
세외수입	소 계	14,949,912,000	24,373,847,505	22,716,074,725	187,623,150	1470,149,630
	재산임대료	616,620,000	298,051,460	289,071,550	0	8,979,910
	사용료	1,115,442,000	1,317,908,100	1,302,771,580	0	15,136,520
	수수료수입	472,434,000	688,545,880	687,987,590	0	558,290
	사업수입	655,904,000	812,621,710	812,582,530	0	39,180
	징수교부금수입	281,202,000	392,383,035	392,383,035	0	0
	이자수입	1,210,284,000	1,256,786,400	1,256,786,400	0	0
	재산매각수입	579,533,000	4,577,094,280	4,577,094,280	0	0
	부담금	140,675,000	159,981,280	144,196,230	0	15,785,050
	과징금 및과태료등	246,260,000	497,056,980	327,117,250	0	169,939,730
	기타수입	9,527,677,000	12,891,440,750	12,788,047,050	0	103,393,700
	지난년도수입	103,881,000	1,481,977,630	138,037,230	187,623,150	1,156,317,250
지방교부세		198,071,527,000	201,635,795,010	201,635,795,010	0	0
조정교부금등		4,550,000,000	6,130,202,000	6,130,202,000	0	0
보조금		136,974,368,000	135,776,561,380	135,776,561,380	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493,705,500	101,340,162,170	101,340,162,170	0	0

ㅇ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45%인 16,724,099,87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02%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전체 세수의 4.69%인 22,716,074,725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ㅇ 지방교부세는 전체세수의 41.63%인 201,635,795,010원, 조정교부금등은 1.27%인 6,130,202,000원, 보조금은 28.04%인 135,776,561,380원, 보전 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92%인 101,340,162,170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2)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415,136,575,000	472,549,512,500	353,003,875,135	83,381,204,390	36,164,432.,975
결산확인액	415,136,575,000	472,549,512,500	353,003,875,135	83,381,204,390	36,164,432.,975
차 액	0	0	0	0	0

ㅇ 세출결산의 개요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353,003,875,1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70%로 통상적인 집행률 80.00% 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3,381,204,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64%에 해당되고, 불용액은 36,164,432,9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로서 전년도 대비 0.65%가 증가 하였습니다.

ㅇ 세출예산 이용은 없으며, 이체사용은 총무과 인구대책 사업 등 4건 77,090,000원이며 , 전용액은 기획홍보실 공직감찰 등 13건에 223,372,000원 이었습니다.

ㅇ 예비비 사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가뭄대책) 외 8건 2,536,32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203,688,460원을 지출하고, 310,381,840원을 이월하였으며, 22,25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353,003,875,135	353,003,875,135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Y-1 지출액	Y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330,001,691,480	472,549,512,500	353,003,875,135	74.70	23,002,183,655	6.97
일반공공행정	20,378,962,570	33,155,812,580	27,899,534,838	84.15	7,520,572,268	36.90
공공질서 및 안전	1,135,683,030	4,941,774,620	3,324,226,870	67.27	2,188,543,840	192.70
교 육	2,212,823,150	2,250,773,000	2,167,924,570	96.32	△44,898,580	△2.03
문화 및 관광	42,334,690,100	69,827,773,270	43,724,392,457	62.62	1,389,702,357	3.28
환경보호	26,753,658,600	30,597,215,750	21,997,945,470	71.89	△4,755,713,130	△17.77
사회복지	57,930,981,520	63,907,830,480	60,507,199,920	94.68	2,576,218,400	4.45
보 건	4,803,613,320	6,199,127,840	5,012,494,960	80.85	208,881,640	4.35
농림해양수산	97,511,749,018	136,569,963,110	104,106,519,350	76.23	6,594,770,332	6.76
산업 중소기업	1,565,465,920	5,283,536,550	2,317,246,760	43.85	751,780,840	48.02
수송 및 교통	8,559,104,130	16,022,984,040	9,992,907,860	62.37	1,433,803,730	16.75
국토 및 지역개발	19,272,464,545	35,047,004,260	22,176,895,640	63.28	2,904,431,095	15.07
예 비 비	0	17,638,988,000	0	0	0	0
기 타	47,542,495,577	51,106,729,000	49,776,586,440	97.40	2,234,090,863	4.70

○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서의 집행율이 43.85%로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진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예산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균집행율인 74.70% 보다 높여야 할 것입니다.

3. 특별회계

1)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0,571,611,120**	**10,427,270,383**	**10,281,701,413**	**0**	**145,568,970**
상수도	2,113,107,000	1,936,886,180	1,905,782,950	0	31,103,230
수질개선사업	2,199,665,120	2,190,660,590	2,190,660,590	0	0
의료급여기금	1,103,965,000	1,071,644,390	1,071,644,39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1,124,903,000	1,157,676,193	1,107,930,253	0	49,745,94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166,840,000	166,944,110	166,944,110	0	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3,382,989000	3,383,915,020	3,329,555,220	0	54,359,800
농공지구조성사업	22,178,000	22,122,250	22,122,250	0	0
주차장	457,706,000	497,163,540	486,803,540	0	10,360,000
기반시설	258,000	258,110	258,110	0	0
결산확인액	10,571,611,120	10,427,270,383	10,281,701,413	0	145,568,97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10,427,270,383원의 98.60%인 10,281,701,413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1.40%인 145,568,97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31,103,230원과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 54,359,800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의 불납결손액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10,281,701,413	10,281,701,413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2)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9,974,810,000**	**10,571,611,120**	**4,433,601,810**	**159,373,000**	**5,978,636,310**
상수도	2,113,107,000	2,113,107,000	1,598,446,270	0	514,660,730
수질개선사업	1,602,864,000	2,199,665,120	1,477,658,540	159,373,000	562,633,580
의료급여기금	1,103,965,000	1,103,965,000	1,056,167,550	0	47,797,450
기초생활보장기금	1,124,903,000	1,124,903,000	74,654,000	0	1,050,249,00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66,840,000	166,840,000	166,814,430	0	25,57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3,382,989,000	3,382,989,000	5,100,000	0	3,377,889,000
농공지구조성사업	22,178,000	22,178,000	21,757,830	0	420,170
주차장	457,706,000	457,706,000	32,745,390	0	424,960,610
기반시설	258,000	258,000	257,800	0	200
결산확인액	9,974,810,000	10,571,611,120	4,433,601,810	159,373,000	5,978,636,31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특별회계 지출액은 4,433,601,81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41.94%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9,373,000원이며, 불용액은 5,978,636,310원입니다. 불용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050,249,000원과, 주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3,377,889,000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민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일부사업이 추진되어 92.02%가 불용처리 되었으나 당해연도에는 99.85%가 불용처리 되어 융자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433,601,810	4,433,601,810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년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 건수, 원)

구분	합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88	83,540,577,390	8	5,624,180,000	233	61,858,155,690	147	16,058,241,700	
일반회계	387	83,381,204,390	8	5,624,180,000	232	61,698,782,690	147	16,058,241,700	
특별회계	1	159,373,000	0	0	1	159,373,000	0	0	

검사결과 계속비는 8건 5,624,180,000원이고, 명시이월은 233건 61,858,155,690원 이며, 사고이월은 147건 16,058,241,7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년 대비 25,655,015,620원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은 2,673,76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계

속비이월은 2,797,939,850원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5,530,838,7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4,844,116,200**	**419,468,670**	**737,574,820**	**4,526,010,050**
일반회계	3,766,117,000	0	0	3,766,117,000
특별회계	1,077,999,200	419,468,670	737,574,820	759,893,050
기초생활보장기금	191,703,400	97,656,670	93,950,820	195,409,25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886,295,800	321,812,000	643,624,000	564,483,800

검사결과 채권은 당해연도에 419,468,670원이 발생하였고, 737,574,820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526,010,050원으로 전년도대비 6.57% 감소하였습니다.

나. 채 무

채 무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693,600,000**	**0**	**693,600,000**	**0**	**0**
일반회계	693,600,000	0	693,600,000	0	0

검사결과 채무는 지역개발기금차입금으로써 당해연도 발생액 없이 693,600,000원을 상환하여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7년도 금융리스(BTL포함) 자산부채 상환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상환재원	총상환금액			2017년까지 상환액			미상환현액(부채잔액)			상환기간(리스회사)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총계	계	133,965	92,602	41,363	52,750	24,972	27,778	81,215	67,630	13,585	-
	국비	63,816	43,489	20,327	24,716	11,388	13,328	39,100	32,101	6,999	
	군비	70,149	49,113	21,036	28,034	13,584	14,450	42,115	35,529	6,586	
하수관거정비사업	계	58,788	39,436	19,352	24,639	11,284	13,355	34,149	28,152	5,997	2010.3 ~2030.3 (20년) ㈜남양강진씨앤지
	국비(환경부)	41,122	27,585	13,537	17,235	7,893	9,342	23,887	19,692	4,195	
	군비	17,666	11,851	5,815	7,404	3,391	4,013	10,262	8,460	1,802	
강진문화복지타운	계	72,403	50,705	21,698	26,432	12,267	14,165	45,971	38,438	7,533	2011.6 ~2031.3 (20년) (강진문화원주식회사)
	국비(문체부)	13,203	9,246	3,957	3,949	1,850	2,099	9,254	7,396	1,858	
	국비(복지부)	9,440	6,611	2,829	3,489	1,606	1,883	5,951	5,005	946	
	군비	49,760	34,848	14,912	18,994	8,811	10,183	30,766	26,037	4,729	
에너지절약형가로보안등교체	계	2,572	2,273	299	1,507	1,262	245	1,065	1,011	54	2012.9 ~2021.10 (110개월) (지에스네오텍)
	국비	0	0	0	0	0	0	0	0	0	
	군비	2,572	2,273	299	1,507	1,262	245	1,065	1,011	54	
재해복구체계구축	계	80	72	8	80	72	8	0	0	0	2012.12 ~2017.9. (5년) (NH캐피탈)
	국비	20	18	2	20	18	2	0	0	0	
	군비	60	54	6	60	54	6	0	0	0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계	122	116	6	92	87	5	30	29	1	2014.12. ~2019.3. (5년) (한국IBM)
	국비	31	29	2	23	21	2	8	8	0	
	군비	91	87	4	69	66	3	22	21	1	

▣ 금융리스(BTL포함) 자산 부채결산개요

○ 우리군 금융리스(BTL포함) 자산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자산사업으로 상환금액은 총 133,965백만원(원금92,602백만원 / 이자41,363백만원)이며, 재원별 상환금액은 국비 63,816백만원(47.64%) 이고, 군비70,149백만원(52.36%)임.

○ 2017회계연도까지 5개 금융리스자산 상환액은 52,750백만원(국비24,716백만원 / 군비28,034백만원) 으로 38.38%이며, 미상환액은 81,215백만원(국비39,100백만원 / 군비42,115백만원) 으로 60.62%임.

○ 금융리스 5개 자산 사업별 미상환 부채액은 하수관거정비사업 34,149백만원(국비 23,887백만원 / 군비10,262백만원)이고, 강진문화복지타운 45,971백만원(국비 15,205백만원 / 군비30,766백만원)이며, 에너지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은 1,065백만원(군비 1,065백만원),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은 상환완료 하였으며,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 30백만원(국비8백만원 / 군비22백만원)임.

○ 금융리스 5개 자산 상환기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남양강진씨앤지에 2030년3월까지, 강진문화복지타운은 강진문화원(주)에 2031년 3월까지, 에너지절약형 가로보안등 교체는 지에스네오텍에 2021년 10월 까지이며, 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사업은 한국IBM에 2019년 3월까지임.

6.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가. 기 금

본 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금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이 월	수 입				지출	당 해 연도말 현 재
		계	전입금	보조금	이자,기타		
합 계	5,166,652,119	954,671,120	570,000,000	206,930,000	177,741,120	642,262,400	5,479,060,839
체육진흥	743,086,742	9,573,180	0	0	9,573,180	10,000,000	742,659,922
문화예술진흥	581,888,966	35,912,690	30,000,000	0	5,912,690	70,000,000	547,801,656
식품진흥	261,531,559	20,704,540	10,000,000	6,100,000	4,604,540	6,100,000	276,136,099
재해재난관리	1,445,368,998	341,314,490	130,000,000	200,830,000	10,484,490	411,311,210	1,375,372,278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	17,062,853	123,580,520	0	0	123,580,520	87,563,590	53,079,783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 지역주민지원	52,596,855	608,840	0	0	608,840	34,423,600	18,782,095
노인복지	2,065,116,146	72,975,910	50,000,000	0	22,975,910	22,864,000	2,115,228,056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지원기금	0	350,000,950	350,000,000	0	950	0	350,000,950

검사결과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479,060,839원으로 전년도 대비 312,408,72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액은 642,262,4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824,27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금운용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공유재산

본 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390,519,804,742**	**57,998,472,358**	**4,977,549,741**	**1,443,540,727,359**
행정재산	소계	1,367,826,033,448	57,712,486,863	4,205,849,887	1,421,332,670,424
	공용 재산	97,992,736,857	39,626,814,500	36,214,530	137,583,336,827
	공공용재산	1,267,189,649,586	18,085,672,363	4,169,635,357	1,281,105,686,592
	기업용재산	567,575,155	0	0	567,575,155
	보존용재산	2,076,071,850	0	0	2,076,071,850
일반재산		22,693,771,294	285,985,495	771,699,854	22,208,056,935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53,020,922,617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을 보면 공용재산이 39,590,599,970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재산은 13,916,037,006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인 강진~마량간 국도확포장편입부지와 사내간척지 토지 매각 등으로 일반재산이 485,714,35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 물품

본 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수 량	795	91	54	832
금 액	5,716,469,000	900,677,480	469,315,967	6,147,830,513

결산보고서상 물품은 전년도 대비 431,361,513원이 증가한 6,147,830,513원이며, 주요 취득 품명은 차량 구입과 냉난방기 등이고, 매각처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및 컴퓨터, 복사기 처분 등으로, 당해연도 결산서상 표기된 수치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일치하였습니다.

Ⅲ.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재무제표의 전반적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 검사를 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검토인의 적격성 여부, 검토절차의 적정성, 검토결과의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확인, 검토보고 내용 확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재무제표 검토인 최순환 공인회계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검토업무 범위와 내용에 대한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면밀히 검토되었고, 필수보충정보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부속명세서 등이 전반적으로 성실히 검토되어 있음을 검사로 확인하였음. 다만, 검토인이 검토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수정방안, 개선대안에 대한 권고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처리하여 검토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검토결과 권고사항을 반드시 문서화하기를 권고합니다.

○ 2017회계연도 강진군 재무제표 검사결과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진군의 총자산은 1조 7,329억원이고 총부채는 850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6,479억원으로, 전년대비 6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7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요약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49,313	8.62	117,296	7.02
투자자산	4,207	0.24	4,706	0.28
일반유형자산	56,428	3.26	52,007	3.11
주민편의시설	273,208	15.77	265,576	15.90
사회기반시설	1,247,934	72.01	1,228,441	73.55
기타비유동자산	1,842	0.11	2,073	0.12
자산총계	1,732,932	100.00	1,670,099	100
유동부채	10,897	12.82	13,172	15.19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74,088	87.18	73,561	84.81
부채총계	84,984	100.00	86,732	100
고정순자산	1,506,479	91.42	1,473,307	93.05
특정순자산	5,502	0.33	5,180	0.33
일반순자산	135,967	8.25	104,880	6.62
순자산총계	1,647,948	100.00	1,583,367	100
부채및순자산총계	1,732,932	-	1,670,099	-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 사업순원가	251,257	138,890	112,367	-	112,367	215,023	137,627	77,395	-	77,395
Ⅱ. 관리운영비	-	-	40,129	(1,659)	38,470	-	-	46,430	(1,287)	45,142
Ⅲ. 비배분비용	-	-	24,145	-	24,145	-	-	20,780	-	20,780
Ⅳ. 비배분수익	-	-	17,219	-	17,219	-	-	11,302	-	11,30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159,422	(1,659)	157,763	-	-	133,303	(1,287)	132,016
Ⅵ. 일반수익	-	-	227,019	(1,659)	225,360	-	-	201,096	(1,287)	199,809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	-	(67,598)	-	(67,598)	-	-	(67,793)	-	(67,793)

Ⅳ. 성과보고서

○ 강진군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강진군은 '열린 마음과 큰 생각으로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강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목표수 1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목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 보면 기획홍보실 등 11개 부서가 당초계획 지표수의 100%만 성과 달성 하였고, 주민복지실, 미래산업과, 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고려청자박물관, 다산기념관 등 9개 부서는 당초계획 지표수에 대한 성과를 일부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는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았고, 당초계획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성과계획서와 일치시키고, 성과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시 임의로 변경하지 말고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산식과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 성과보고서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성과지표작성현황 별첨 : 별표1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총괄)

〔별표〕 (단위:개, 원)

부서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목표수	정책 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63	174	7	153	14	357,437,476,945	335,096,944,720	22,340,532,225
기획홍보실	1	1	3	1	2	0	3,324,757,340	2,507,571,610	817,185,730

주민복지실	1	7	34	0	32	2	62,209,681,120	59,000,298,170	3,209,382,950
미래산업과	1	4	12	0	10	2	3,524,086,378	5,480,992,920	-1,956,906,542
친환경농업과	1	1	4	0	4	0	38,956,120,670	42,428,067,748	-3,471,947,078
환경축산과	1	7	13	0	10	3	21,478,539,130	19,338,840,270	2,139,698,860
해양산림과	1	2	9	1	8	0	22,681,282,120	23,937,473,740	-1,256,191,620
문화관광과	1	3	5	1	3	1	34,927,420,060	33,105,004,850	1,822,415,210
지역개발과	1	4	13	0	11	2	17,410,039,000	15,456,053,040	1,953,985,960
안전건설과	1	8	16	0	16	0	42,669,359,630	29,889,481,435	12,779,878,195
민원봉사과	1	5	10	0	9	1	3,899,132,360	3,212,651,760	686,480,600
세무회계과	1	2	9	2	7	0	43,841,615,870	40,083,223,580	3,758,392,290
총무과	1	5	10	1	9	0	17,633,838,170	14,082,067,410	3,551,770,760
의회사무과	1	1	2	0	1	1	578,097,970	551,784,310	26,313,660
보건소	1	1	4	0	3	1	4,947,190,540	4,783,909,120	163,281,420
농업기술센터	1	2	7	0	7	0	6,499,008,340	6,969,334,780	-470,326,440
고려청자박물관	1	1	3	1	1	1	1,084,940,352	1,196,047,860	-111,107,508
상하수도사업소	1	5	12	0	12	0	19,328,003,340	21,972,310,100	-2,644,306,760
스포츠산업단	1	1	3	0	3	0	7,302,510,700	6,436,844,120	865,666,580
다산기념관	1	2	3	0	3	0	1,684,681,740	1,640,219,430	44,462,310
강진군도서관	1	1	2	0	2	0	588,983,895	432,244,900	156,738,995
강진읍	0	0	0	0	0	0	403,037,620	357,184,650	45,852,970
군동면	0	0	0	0	0	0	294,141,910	271,982,670	22,159,240
칠량면	0	0	0	0	0	0	267,114,720	245,854,870	21,259,850
대구면	0	0	0	0	0	0	197,576,940	194,647,257	2,929,683
마량면	0	0	0	0	0	0	228,460,650	175,329,230	53,131,420
도암면	0	0	0	0	0	0	273,247,800	253,233,530	20,014,270
신전면	0	0	0	0	0	0	210,767,500	191,790,910	18,976,590
성전면	0	0	0	0	0	0	263,334,430	243,380,490	19,953,940
작천면	0	0	0	0	0	0	271,650,180	246,576,740	25,073,440
병영면	0	0	0	0	0	0	231,999,900	210,605,160	21,394,740

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회계연도내 국 ·도비 미 수령액 과다발생

〔현 황〕 (단위 : 천원)

실과	사업명	미수령액				비고
		계	지특	국비	도비	
계	**6건**	**2,630,700**	**823,000**	**965,000**	**842,700**	
지역개발과	남포새뜰마을	156,000	140,000	-	16,000	
안전건설과	농어촌중심활성화	683,000	683,000	-	-	
안전건설과	주민숙원사업	309,000	-	-	309,000	
안전건설과	사내방조제개보수	311,000	-	311,000	-	
안전건설과	영복방조제개보수	764,700	-	654,000	110,700	
안전건설과	한발대비용수개발	407,000	-	-	407,000	

〔문제점〕

○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회계연도 내 국·도비 보조금 수입 상황을 확인한 바, 지역개발과와 안전건설과 등 2개 부서의 6개 보조사업 국·도비 26억원이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수입되는 등 합법적 재정 운용 및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강진군에서는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비가 당해 연도 내에 수령 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에 수시 요청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회계 세입금 이월액 과다 발생

〔현 황〕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7,078,685**	**6,975,641**	**6,830,072**	**145,569**		**145,569**
상수도	2,113,107	1,936,886	1,905,783	31,103		31,103
기초생활보장	1,124,903	1,157,676	1,107,930	49,746		49,746
주민소득증대	3,382,969	3,383,915	3,329,555	54,360		54,360
주차장	457,706	497,164	486,804	10,360		10,360

※ 특별회계 미수납액(이월액) 내역

회계별	계	무재산	행불	납세태만	압류및소송	기타
계	**145,569**	**20,359**	**31,412**	**64,532**	**6,440**	**22,826**
상수도	31,103	1,599	10,612	10,866		8,026
기초생활보장	49,746			49,746		
주민소득증대	54,360	18,760	20,800			14,800
주차장	10,360			3,920	6,440	

〔문제점〕

○ 회계연도내 세입금은 연도말 이내에 징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2017년 특별회계 세입 이월액은 2016년 세입 이월액 대비 16.5%증가된 145.56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도특별회계는 8,051천원, 기초생활보장 6,782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360천원이 신규 발생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세입금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으니 연중 징수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결손처분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부진

〔현 황〕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472,549,512,500	353,003,875,135	83,381,204,390	36,164,432,975

〔문제점〕

○ 집행잔액이 2016년의 경우 전체 예산규모의 5.28%인 212억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전체예산의 7.66%인 362억원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자금집행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전체 예산 규모의 10%에 가까운 458억원의 잉여금은 예산의 과다 편성 및 세수 판단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 다만 국·도비 등의 증가로 인한 재원 대체 등으로 군비부담액이 집행 잔액으로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세심한 판단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4.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소	건 수	사업명	예산액	삭감액	비 고
계	**10**		**214,130**	**△214,130**	
기획홍보실	2	실비보상 등	11,130	△11,130	
주민복지실	3	복지회관시설 등	137,000	△137,000	
미래산업과	2	자문관수당 등	20,000	△20,000	

실과소	건 수	사업명	예산액	삭감액	비 고
총무과	2	교류추진 등	40,000	△40,000	
보건소	1	소모품구입	6,000	△6,000	

〔문제점〕

○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는 집행시기를 잘 파악하여 예산집행에 원활을기하여야 하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5개 부서에서 10건 214,130천원의 예산이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을 기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편성 후 치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편성된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 이월제도 운영 미흡

〔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계	**379**	**241,966,256**	**155,283,887**	**131,006,208**	**77,757,025**	
명시이월	232	143,613,558	80,836,279	73,521,840	61,698,783	
사고이월	147	98,352,698	74,447,608	57,484,368	16,058,242	

〔문제점〕

○ 예산의 이월제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특별히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밝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급적 당해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을 살펴본 바, 명시이월이 232건/ 617억원, 사고이월이 147건/ 160억원을 이월하여 2016회계연도에 비해 이월액이 140건에 2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군의 예산 규모에 비하여 많은 예산을 이월 조치하였음은 사업 추진시기나,

기후 변화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는 판단되나 예산 집행 및 편성관리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회계연도 예산편성 이후에는 세밀한 집행계획을 사전에 세워 당해연도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6. 사업비 과다 불용처리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계	**2,412,180**	**448,416**	**1,963,76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161,880	51,799	110,081	2회 추경확보(17.9월) 사업대상자 선정 어려움으로 불용처리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266,900	210,960	1,055,940	2015년 명시이월 사업 토지소유자 분쟁 공사중단 사업포기
귀어자 지원사업	270,000		270,000	2016년 명시이월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어려움으로 미추진
생태공원 조성용역	100,000		100,000	2016년 명시이월, 계획변경으로 미추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613,400	185,657	427,743	2016년 명시이월과 2017년 예산으로 사업 추진 미흡

〔문제점〕

○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계획년도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친환경농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 등 5건의 사업은 추경, 이월사업임에도 사업대상자 선정 어려움과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 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이므로 사업 포기나 계획 변경 등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각종 공사(용역)비 과다 설계 지양

〔현 황〕

○ 2017회계연도의 각종 공사(용역)비 중에서 30%이상 증액된 총 25건의 사업비는 7개 실과(미래산업과, 문화관관광과, 안전건설과, 해양산림과, 지역개발과, 환경축산과, 다산기념관)에 해당됩니다.

○ 25건의 사업비는 당초 1,763백만원의 사업비로 발주하여 1,318백만원이 증액된 3,082백만원으로써 평균 43%가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77호 2017.2.1.)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 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 공정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과다 발생 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첨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이나 불가 피한 현지사정 등으로 증액된 경우도 있으나 일부 사업은 설계 용역시부터 기초 조사 및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라고 사료되며 차후 공사 시행시 사업비 과다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및 공사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버스 운송사업 재정보조금 예산편성 관리 미흡

〔현 황〕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761,355	761,355	-	

〔문제점〕

○ 2017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금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강진군에서는 2017년도 농어촌버스운송 재정지원 사업비 (761,355천원)를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편성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금후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금은 강진군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편성 및 집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9. 공유재산(건물) 권리보전조치(등기) 소홀

〔현 황〕 (단위 : ㎡)

건물명	소재지	구조	면적	취득일자	용도	등기일자	공제가입
가우도 복합 낚시 관리실	도암. 신기 21-9	철근 콘크리트	99	2015.6.8.	사무실	2017.9.8.	2018.1
마을공동 작업장	강진. 춘전 335-3	일반철골	834	2016.1.22.	농산물 선별장		2018.1

건물명	소재지	구조	면적	취득일자	용도	등기일자	공제가입
하수처리 시설	성전. 성전 315-1	철근 콘크리트	460	2017.8.22.	하수처리 시설	2017.12.20.	2018.1

〔문제점〕

○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 후 등기 이전 등 권리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나

○ 가우도 복합 낚시 시설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등기를 하였고 친환경농업과 마을공동작업장은 2016년 1월에 취득하였으나 아직까지 권리 보전 조치를 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친환경농업과 마을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등기 이전 조치하시고 금후 취득 건물 및 토지 등 공유재산은 취득 즉시 권리 보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현 황〕

구분	실과소	총지표수	성과달성				비 고
			초과	달성	미달성	미달성률	
차 이	-	-	1	17	△18	△10.3%	
당초보고	20	174	6	136	32	18.3%	
검사결과	20	174	7	153	14	8.0%	

○ 2016회계연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 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성과보고서 작성 이유는 실과소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강진군의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점〕

○ 성과 목표 지표수로 설정된 지표는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의 3가지로 평가되어야 하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당초 보고서와 검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보고서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 당초 성과보고서에 미달성이 32개지표로 보고되었으나 각 실·과·소 업무담당자의 재확인 결과 18개 지표는 목표 달성되었으나 입력 누락으로 검사되었으며 실제 미달성지표는 14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초과 달성 7개 지표는 검사결과 담당부서의 노력과 업무 연찬으로 초과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이해하고 계획과 실적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달성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Ⅵ.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

□ 전년도 검사 결과

1. 회계연도내 국·도비 미 수령액 과다
2. 세입금 이월액(체납액)과다
3.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과다
4. 인건비 결산액 분석
5. 예산편성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
6. 예산 이월제도 운영 부적성
7.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부진
8. 보조금사업 관리 및 집행소홀
9.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소홀

□ 조치내용

1. 회계연도내 국·도비 미수령액 과다

○ 2016년도에 친환경농업과 등 6개과에서 국·도비 보조금 1,608백만원이 미수입되어 예산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 그동안 중앙부처나 전남도 등 상부기관에 지속 건의 등 후속 조치하여 2017년 3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 세입금 이월액(체납액) 과다 (단위 : 천원)

회계별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계		2,238,573	59,590	19,635	2,058,445	68,061	32,842
일반회계	소계	2,093,004	59,590	19,635	1,943,979	68,061	1,739
	지방세	622,854	59,590	19,635	473,829	68,061	1,739
	세외수입	1,470,150	-	-	1,470,150	-	-
특별회계	소계	145,569	-	-	144,466	-	31,103
	상수도	31,103	-	-	-	-	31,103
	기초생활	49,746	-	-	49,746	-	-
	주민소득	54,360	-	-	54,360	-	-
	주차장	10,360	-	-	10,360	-	-

○ 별도의 특별징수활동반 등을 연중 운영하여 집중 징수 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일부 실·과에 집중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 과다

[일반회계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A)	결산액(B)	차액(C)	C/A(%)	비고
2015	276,664,168	391,467,276	증114,803,108	41	
2016	280,062,775	431,242,116	증151,179,341	54	
2017	472,549,513	486,734,016	증14,184,503	3	

○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 비율을 2016년도 54%에서 2017년도 3%로 개선하였습니다.

4. 인건비 결산액 분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46,244,684**	**46,366,498**	**44,468,509**	**290,005**	**1,607,984**	
보수(01)	30,381,647	30,381,647	30,244,981	-	136,666	
기타직보수(02)	1,006,361	1,006,361	955,665	-	50,696	
무기계약직보수(03)	6,997,149	6,997,149	6,263,891	-	733,258	
기간제근로자보수(04)	7,859,527	7,981,341	7,003,972	290,005	687,364	

○ 2013년~2016년 무기직 임금인상 미반영분을 2017년에 소급 지급하기로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미반영분의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대비 596,096천원 증가) 무기계약직 임금인상 미반영분의 정산이 끝난 만큼 차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편성 전액 불용액 처리 불합리

실과별	건수	예산(현)액	불용액	비고
계	**70**	**427,349**	**427,349**	
기획홍보실	2	990	990	
주민복지실	4	24,277	24,277	
친환경농업과	1	13,500	13,500	
환경축산과	5	38,800	38,800	
해양산림과	15	150,850	150,850	
문화관광과	6	54,510	54,510	
지역개발과	1	1,800	1,800	

실과별	건수	예산(현)액	불용액	비고
안전건설과	5	4,100	4,100	
세무회계과	1	1,980	1,980	
총무과	11	74,699	74,699	
농업기술센터	6	17,500	17,500	
고려청자박물관	5	20,800	20,800	
상하수도사업소	1	1,825	1,825	
다산기념관	2	1,990	1,990	

○ 2017회계연도 전액 불용액은 427,349천원으로 전년대비 134%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액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에는 면밀한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라며 추경때는 정확한 예상을 통해 전액 불용액을 감소시키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 예산 이월제도 운영 부적성

구 분	건수	예산현액	지출원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79**	**241,966,256**	**155,283,887**	**131,006,208**	**77,757,025**	**33,203,023**
명시이월	232	143,613,558	80,836,279	73,521,840	61,698,783	8,392,935
사고이월	147	98,352,698	74,447,608	57,484,368	16,058,242	24,810,088

○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강진군의 일정도 함께 지연 되었으나 이월액은 2016년 489억원보다 288억원이 증가한 777억원으로 많은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의 수립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 집행부진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472,549,512	353,003,875	83,381,204	36,164,433

○ 부문별 예산과목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부문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비율	비고
환경보호	30,597,216	507,694	1.65	전년 : 11.83
산업중소기업	5,283,567	401,951	7.60	전년 : 7.86

○ 2016년에 집행잔액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던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집행잔액 비율은 각각 11.83%→1.65%, 7.86%→7.6%로 개선하였습니다.

8. 보조금사업 관리 및 집행소홀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는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강진군의 경우 타시군의 군비 부담이 60%정도 되나 강진군은 6%만 부담하는 실정이어서 2016년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2017년에는 도비 지원의 경우 지원액이 없으며 2018년도에 연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은 맥류 건조 저장 시설로 사업 변경 승인은 받았으나 최종 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여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 유가보조금은 우리군의 신청액보다 많은 금액이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어 집행잔액 정리가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유가보조금 교부 신청액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집행 잔액 최소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9.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친환경보조사업 위반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잡종금) 265,337천원은 세입 조치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2017년 결산 검사시까지 잡종금으로 보관되고 있어 2017년 권고사항으로 재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Ⅰ. 행정사무감사 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제41조 및「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8. 11. 26.(월) ~ 2018. 12. 12.(수)

3. 감사대상 사무

ㅇ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ㅇ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4. 감사대상기관 : 강진군 실과소, 읍 · 면

5. 위원회 구성

가. 행정복지위원회

ㅇ 위원장 : 김명희 위원장

ㅇ 위　원 : 문춘단, 윤기현, 김창주, 김보미 위원

나. 농업경제위원회

ㅇ 위원장 : 서순선 위원장

ㅇ 위　원 : 문춘단, 윤기현, 김창주, 김보미 위원

6. 감사일정

일정별	감 사 대 상	비 고
11. 26.(월)	○ 기획홍보실, 주민복지실, 관광과, 문화예술과, 민원봉사과	행정사무 감사특별 위원회실 (본회의장) 및 사업장
11. 27.(화)	○ 세무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11. 28.(수)	○ 일자리창출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11. 29.(목)	○ 건설과, 안전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11. 30.(금)	○ 현장 확인 · 점검 - 강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 - 가우도 청자타워 - 도암 라디오 강진 스튜디오 - 도암 망호 지구 버스킹 무대 - 도암 노인요양시설(은빛마을) - 마량 신마항 - 가우도 출렁다리 - 도암 망호 선착장	
12. 12.(수)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 및 이송	

7.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 응답을 통한 감사

○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

○ 현장 확인 · 점검 실시

8. 감사결과 및 처리안건 – 75건 (사안별 내역 별첨)

○ 시정요구사항 : 9건

○ 제 안 사 항 : 66건

Ⅱ. 총 평

○ '2019강진 관광도시의 해'추진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과 강진군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림.

○ 특히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역민이 많이 참여하여 강진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변화 발전하는 강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9건을 시정 개선 요구하였으며, 66건을 제안 제시하였음.

○ 행정복지위원회 주요 시정·개선사항으로는 각종 통계자료 적기에 제공,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의 부적절, 의료원 앞 굴다리 부근 조형물 개선, 강진시장 내 야시장 가판대 재활용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강진군과 강진군 의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농업경제위원회 주요 시정·개선사항으로 도로변 방치 된 비닐하우스 관리, 검토, 대구면 용문리 황칠나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강진군과 강진군 의회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집행부의 관행에 얽매이는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히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집행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건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음.

Ⅲ. 주요 지적 및 제안 사항

≪ 일반행정 분야 ≫

1. 각종 통계자료 적기에 제공

○ 군민들이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게시 제공 바람.

2. 군민명예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등 내실 운영

○ 전남도에서는 도민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군도 군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역량강화워크숍 및 교육 실시하여 내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3. 군정 아이디어 군민참여 방안 강구

○ 군정 아이디어 제안이 예년에 비해 군민 참여가 줄어들고 공무원 참여가 많음. 군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 중 군민의 제안 정책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시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느껴짐. 군민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되어 자긍심을 가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람.

4. 명시 및 사고 이월 예산 최소화

○ 현안 사업은 해당연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5. 강진군 CCTV 관제 홍보 확대 및 영상 보관 기간 확대 필요

○ 강진군 CCTV 관제로 군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상회 등 홍보지에 게재 홍보하여 관제센터의 존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 범죄 발생 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므로 CCTV 추가 설치와 영상 보관 기간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화관광 분야 ≫

1.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 테마별 조성

○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나무 식재보다는 구역별, 단계별, 테마별로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기 조성된 후박나무 가지치기 등 잘 관리토록 검토 바람.

2. 가우도 짚트랙 운영계획 안내 표지판 설치

○ 가우도 짚트랙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짚트랙 미운행 시 안내 표지판이 없어 짚트랙을 이용하기 위해 청자타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음. 청자타워 가는 길목에 당일 짚트랙 운영계획 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청자 소성 및 제작 방법 등 표기 검토

○ 강진군에서는 청자를 대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비슷한 청자 상품이 왜 가격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임. 청자 소성법(화목, 가스, 전기가마 등), 청자 제작법(모델링, 핀칭, 석고틀, 물레 등)을 작품에 표기하여 청자의 가격 차별화 둘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강진 시장내 야시장 가판대 재활용 검토

○ 강진 시장내 야시장 가판대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른 곳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5. 강진합창단을 강진군 합창단으로 승격

○ 강진 합창단을 강진군 합장단으로 승격시켜 품격 있는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 바람.

≪ 보건복지 분야 ≫

1. 임산부 주차장 검토

○ 강진군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임산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2. 늦봄 문익환 학교 지원 확대

○ 강진군 도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늦봄 문익환 학교가 강진군 소재 다른 학교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별 없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조정 검토

○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는 다는 것은 성비 균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비율이 규정에 맞는 비율이 되도록 지속 관리가 필요함.

4. 중학생 해외연수와 저소득층 해외 탐방 중복 문제점

○ 중학교 2학년 전체의 해외 연수와 저소득층 해외 탐방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5. 노인 복지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

○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농림축수산업 분야 ≫

1. 도로변에 방치 된 비닐하우스 관리

○ 강진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치된 비닐하우스가 없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비닐하우스 지원 보조금 부당수령 환수

ㅇ 2016년부터 3개 농가가 비닐하우스 지원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지적되어 환수 결정 되었지만 환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조속히 환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아열대 작목 시범 육성

ㅇ 우리나라 기온의 온난화에 따라 아열대 작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아열대 작목의 시범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4. 놀토수산시장 컨테이너 개선

ㅇ 중방파제에 위치한 놀토수산시장의 판매장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 마량 미항과는 어울리지 않아 개선 대책이 필요함.

ㅇ 특히 컨테이너는 바닷물에 취약하므로 부식 등에 의해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음.

5. 마량 신마항 부두 CCTV 설치

ㅇ 마량 신마항에 해양쓰레기와 더불어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으므로 CCTV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역개발 분야 ≫

1. 강진사랑상품권에 대하여

ㅇ 강진사랑상품권 판매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ㅇ 강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상인들의 수혜가 크지 않은 경우 가성비를 따져 운영 방향 전환의 검토가 필요함.

2. 강진시장 배달 서비스 개선

ㅇ 시장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짐을 손수레로 옮기는 지원사업 관련하여 손수레보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에서 식당 등에 농산물이나 물품을 공급할 때 상인들이 각자 납품하기보다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3. 강진골프장 인력 채용 및 식자재 사용

○ 최근 강진에 골프장(다산베아체)이 개장해서 강진군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지만 골프장 내 인력 채용 및 식자재 사용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의 인력채용과 식자재 사용에 대해 우리군 거주 군민의 채용과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골프장 측과 협의 추진 바람.

4.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 도시계획도로는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 인도와 가로수 식재 등을 감안하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관련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대규모 사업으로 강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Ⅳ. 결 과 통 보

○ 붙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시정 요구사항 9건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통보 하기 바라며,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 제안사항 66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시정과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행정복지위 원회)::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	녹색숲 조성 관련 테마숲 발굴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사업 추진 시 무분별한 나무 식재보다는 구역별, 단계별, 테마별로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기 조성된 후박나무 가지치기 등 잘 관리토록 검토 바람. ○향기의 섬 조성사업 추진 시 테마별로 조성하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수 있지 않을지 검토 바람.	제안	
2	각종 통계자료 적기에 제공	○군민들이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강진군 홈페이지 등에 각종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시기적절하게 게시 제공 바람.	시정	
3	가로수 동백나무 부적절 개선 필요	○음지 식물로 잘 크지 않는 동백나무는 가로수 식재로 적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시정	
4	향수와 정겨움을 안겨주는 과거와 현재 연속사업 검토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 장흥댐 건설 시에 수몰 되었던 지역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책자에 남아서 보관되고 있음. 사업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5	군민명예감사관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등 내실 운영	○전남도에서는 도민명예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음. 우리 군도 군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역량강화워크숍 및 교육 실시하여 내실 운영이 될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6	군정 아이디어 군민참여 방안 강구	○군정 아이디어 제안이 예년에 비해 군민 참여가 줄어들고 공무원 참여가 많음. 군민 참여가 줄어든 이유 중 군민의 제안 정책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고 시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느껴짐. 군민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되어 자긍심을 가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람.	제안	
7	명시 및 사고 이월 예산 최소화	○현안 사업은 해당연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	
8	의료원 앞 굴다리 부근 조형물 개선	○의료원 앞 굴다리 부근에 청자와 다산의 만남 조형물을 설치했음. 어두운 배경으로 음침한 느낌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제안	
9	늦봄 문익환 학교 지원 확대	○강진군 도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늦봄 문익환 학교가 강진군 소재 다른 학교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차별 없는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제안	
10	만물 목공수리사업 읍 면 업체 활용	○만물 목공수리 사업 추진 시 읍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면 업체를 이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킬 방안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1	임산부 주차장 검토	○강진군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되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임으로 임산부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2	노인 복지시설 근무자 처우 개선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게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제안	
13	관광시설물 설치보다 유지 보수 철저	○관광시설물을 설치보다는 유지 보수가 더 중요함. 가우도 출렁다리 등 일부시설물의 노후화 등에 대하여 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제안	
14	성인지 예산 교육 적극 참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 조정 검토	○성인지 예산교육은 적극 참여를 통해 사업 추진 시 예산 등에 반영되어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검토 바람.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는 다는 것은 성비 균등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비율이 규정에 맞는 비율이 되도록 지속 관리가 필요함.	시정	
15	저두마을 사업 조속 해결	○저두마을 육성 사업 및 불법 가판대, 판매장 업체 선정 등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협동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바람.	제안	
16	섬문화 스토리텔링 연계사업 검토	○관광사업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가우도 일대를 마차로 일주하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제안	
17	가우도 관련	○외도에 좋은 수목 식재가 심어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벤치마킹을 통해 가우도에 활용하여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8	관광지 주차장, 안전 등 관리부서 나눠져 있어 조율 필요	○가우도 관련하여 주차장과 안전관리 등 관리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총괄 관리 부서가 필요함.	제안	
19	축제 관련하여	○군민토론회에서 청자축제 시기를 10월 초로 개최하기로 했지만 10월에 청자축제와 갈대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힘이 들 것으로 판단 됨. 청자축제를 가을로 옮긴 이유가 폭염 때문이라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하여 주위 온도를 낮춰 여름시기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바람. ○우리 군은 대표적인 농업군으로 청자축제를 가을로 변경할 경우 농번기와 중복되어 주민 참여도가 낮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축제를 위한 사업은 축제 시작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하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도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다음부터는 축제 시작 전 모든 공사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46회 청자축제에는 관광객 급감하였으며, 청자 판매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으므로 관광객 유치와 청자판매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청자조합의 판매부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청자축제 경품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특히 청자협동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차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청자협동조합에 모든 비조합원이 가입을 독려하는 등 해결책 마련 필요함. 아울러 축제 시 경품 관련 내부규정과 사전공고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여 금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정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20	한예종 입구 주변 주차 공간 등 활용 방안	○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운동장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주차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제안	
21	강진 시장 내 야시장 가판대 재활용 검토	○강진 시장 내 야시장 가판대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른 곳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시정	
22	영랑문학제 활성화	○영랑문학재가 다른 지역 문학제에 비해 예산 지원이 적어 예산 확대 등으로 많은 문학인들이 영랑문학제에 참여하여 강진을 이끌어 가는 영랑문학제가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제안	
23	가로등 예산 확보 반영	○군민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예산을 적극 반영 바람.	제안	
24	민간업체 판매부스 연장	○민간업체에서 청자축제 기간이 7일로 단축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음. 축제 후에도 부스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제안	
25	강진군 합창단 지원 검토	○강진 합창단을 품격 있는 합창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 합창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제안	
26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역 업체 이용 검토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하여 인근 시 군에서는 지역 업체에 사업자 선정하고 있음. 우리 군도 검토 바람.	제안	
27	칠량 돈사 허가 시 반대 여론 등 면밀히 파악	○ 칠량 돼지 농장 허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면밀히 파악해서 대응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28	체납 상태에서 군 계약 재검토	○ 체납 사업자에게 군 사업에 계약하고 있는 실정임. 체납 완료 후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제안	
29	각종 보험 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 추진	○ 각종 보험 계약시 관내 업체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30	중학생 해외연수 관련	○ 중학교 2학년 전체를 해외 연수와 저소득층 해외 탐방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중학생 해외연수 추진 시 성적보다는 인성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이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제안	
31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 직렬별 승진 소요기간에 편차가 심해 해소방안 마련 바람.	제안	
32	병영상고 실내체육관 건립	○ 병영상업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검토 바람.	제안	
33	비슷한 사회단체 통합 운영 검토	○ 읍 면별로 비슷한 많은 사회단체가 있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제안	
34	다산 시민 강좌 명칭 변경 검토	○ 우리 군에 맞는 다산 강좌 등으로 명칭 변경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35	청자 소성 및 제작 방법 등 표기 검토	○ 강진군에서는 청자를 대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비슷한 청자 상품이 왜 가격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임. 청자 소성법(화목, 가스, 전기가마 등), 청자 제작법(모델링, 핀칭, 석고틀, 물레 등)을 작품에 표기하여 청자의 가격 차별화 둘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36	명인 명품의 공신력 위한 제도 개선	○ 명인 명품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 방안 검토 바람.	제안	
37	다산해배길걷기 체험행사 확대 검토	○ 다산 해배길 걷기 체험행사는 군민들의 참여가 높으므로 확대 추진 방안 검토 바람.	제안	
38	가우도 짚트랙 운영계획 안내 표지판 설치	○ 가우도 짚트랙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짚트랙 미운행 시 안내 표지판이 없어 짚트랙을 이용하기 위해 청자타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음. 청자타워 가는 길목에 당일 짚트랙 운영계획 안내 표지판 설치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제안	
39	강진군 CCTV 관제 홍보 확대 및 영상 보관 기간 확대 검토	○강진군 CCTV 관제로 군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반상회 등 홍보지등에 게재 홍보하여 관제센터의 존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또, 범죄 발생 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으므로 CCTV 추가 설치와 영상 보관 기간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각 마을회관의 CCTV도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제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확대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제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 사항(농업경제위원회)::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	강진사랑상품권 에 대하여	○ 강진사랑상품권 판매 금액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강진사랑상품권을 통해 상인들의 수혜가 크지 않은 경우 가성비를 따져 운영 방향 전환의 검토가 필요함.	제안	
2	도시가스 관련	○ 도시가스 사업을 기간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시가스 선로의 접근이 어려운 개별 주택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제안	
3	강진시장 배달 서비스 개선	○ 시장에서 버스정류장까지 짐을 손수레로 옮기는 지원사업 관련하여 손수레보다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다 더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에서 식당 등에 농산물이나 물품을 공급할 때 상인들이 각자 납품하기보다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제안	
4	강진산업단지 관련	○ 강진산업단지 분양 계약체결업체 중 근로자 임금 체불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계획서 및 자본금 등을 조사하여 이러한 업체가 없는지 확인 바라며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 강진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토지구입비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게 현실이므로 산단 입주 기업 확보를 위해 방안을 모색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5	강진골프장 인력 채용 및 식자재 사용	○ 최근 강진에 골프장(다산베아체)이 개장해서 강진군 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지만 골프장 내 인력 채용 및 식자재 사용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골프장의 인력 채용과 식자재 사용에 대해 우리군 거주 군민의 채용과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골프장 측과 협의 추진 바람.	제안	
6	귀농사관학교 책임자 선정 관련	○ 귀농사관학교 협의회 운영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시정	
7	비어있는 점포 해결 방안 마련	○ 강진읍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어있는 점포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선정하는 등 비어있는 점포의 해결 방안을 강구 바람.	제안	
8	도로변에 방치 된 하우스 관리	○ 강진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방치된 비닐하우스가 없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	
9	비닐하우스 지원 보조금 부당수령 환수	○ 비닐하우스 지원 보조금 2016년부터 3개 농가가 부정 수령으로 지적되어 환수 결정 되었지만 환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조속히 환수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안	
10	농수특산물 판매행사 개최	○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서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판매 행사를 해야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도시 겨냥한 농수축산물 판매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는 방안 강구 바람.	제안	
11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	○주거지, 관광지 등에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악취 발생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2	대구면 용문리 황칠나무 관리	○ 대구면 용문리 군에서 식재한 황칠나무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 대책 필요. ○ 군에서 식재한 나무들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	
13	차선 도색 및 추가 설치	○ 도암면 만덕호 방조제 중간 부분에 설치되 주차장의 주차선 도색과 주민, 관광객이 많으므로 주차장의 추가 설치 검토 바람.	제안	
14	장기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구축	○장기 소득 임산물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마련 바람.	제안	
15	놀토수산시장 컨테이너 개선	○ 중방파제에 위치한 놀토수산시장의 판매장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 마량 미항과는 어울리지 않아 개선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컨테이너는 바닷물에 취약하므로 부식 등에 의해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음.	제안	
16	수협인 공제보험 확대	○ 맨손 어업을 하는 어가들도 수협인 공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협인 공제보험 대상 확대 검토 바람.	제안	
17	방조제 방류 관련	○ 부서별 업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내 방조제 방류에 따른 양식어장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제안	
18	도시계획도로 사업 관련	○ 도시계획도로는 미래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시 인도와 가로수 식재 등을 감안하여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19	강제 양수 시스템 필요	○ 강진 춘곡지구, 도암 신기, 신전 논정지구는 상습 침수 지역이므로 침수발생에 대비하여 강제 양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 바람	제안	
20	경지정리 사업 관련	○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기에 발주 착공으로 농번기에 공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지정리 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지 정리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제안	
21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관련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대규모 사업으로 강진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공사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람.	제안	
22	강진읍 동성리 시장 입구 주차장 검토	○ 강진읍 동성리 시장입구(가거도 횟집 주변)는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함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안	
23	고구마 일관 기계화 지원	○ 고구마 농업은 고구마 정식에서부터 수확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일관 기계화를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제안	
24	틈새작목 확대	○ 쌀귀리의 종자를 구하지 못해 틈새작물 농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쌀귀리 등의 틈색작목 종자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25	아열대 작목 시범 육성	○ 우리나라 기온의 온난화에 따라 아열대 작목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아열대 작목의 시범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26	드렁허리 피해 대책	○ 영농 시 드렁허리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드렁허리에 대한 생태연구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안	
27	일관된 보조 비율 검토	○ 각종 시범사업 마다 보조 비율이 달라 사업신청자들이 혼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들에 대하여 일관된 보조 비율이 되도록 검토 바람.	제안	
28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 농기계 임대사업은 많은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안	
29	한국수자원 공사 강진군 지원 확대	○ 장흥댐을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는 장흥군에 비하여 강진군에 지원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강진군에도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제안	
30	국민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운용	○ 야간에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내 외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안전을 위해 CCTV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 마련 바람. ○ 종합운동장 외곽의 아스팔트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야간에 운동 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하기 바람. ○ 종합운동장 우레탄이 국제규격 기준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국제 규격과 맞지 않을 경우 대책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안	
31	양무정 이전	○모든 스포츠가 국민체육센터 부근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무정을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여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바람.	제안	

연번	제 목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비고
32	탁구전용구장 마련 및 탁구대 구입 비치	○ 우리군은 스포츠의 메카로 많은 스포츠 전지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탁구 또한 전지훈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탁구대가 없어 임대 사용하여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므로 탁구대를 구입 비치하여야 할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람. ○ 탁구 인구의 저변확대와 탁구 전지훈련팀의 사용 등을 위해 탁구 전용구장 건립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검토 바람.	제안	
33	마을 운동기구 대하여	○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순차적 설치하는 방안 검토. ○ 마을 운동기구의 경우 설치된 곳이 많이 있으나 관리가 소홀한 곳이 많으므로 고장, 방치된 운동기구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 점검을 하기 바람.	제안	
34	가족 전체 이용 파크골프장 조성 방안 검토	○ 전남 15곳에 파크골프 협회가 있으며, 12곳은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 파크골프인들의 계속 증가에 따라 강진군에도 파크골프인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파크골프장 수요 조사 하여 조성 검토 바람.	제안	
35	마량 신마항 부두 CCTV 설치	○ 마량 신마항에 해양쓰레기와 더불어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으므로 CCTV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안	
36	외국인 노동자 관련	○ 관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필요 ○ 마량면에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 화합을 위한 쉼터 등의 여가시설 마련 검토 바람.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제8대 강진군의회 의원 당선자 워크숍



제8대 개원식



남도음식문화축제



강진군의회 역량강화 교육



의원간담회



제254회 임시회 현장방문



남북민간교류 강진군운동본부 출범식



병영면민과의대화



제 256 회 임시회 현장방문



강진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연수



마량놀토수산시장
개장식



남양주시의회 방문

의 회 안 내



강진군의회가 하는 일

강진군의회는 집행기관인 강진군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
- 군민이 내는 세금 등으로 살림하고 있는 군 예산의 심의·의결 및 결산의 승인
- 우리 군의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과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보장을 위하여 행정을 잘 추진하는지를 질문하고 의혹이나 주민의 여론이 비등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 역할 수행
- 군민과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군민이 법률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규칙의 제정·개폐, 그 밖의 일 등에 대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 처리(청원)
-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방 청 안 내

강진군의회에서는 군민들에게 의회 안건심의 과정이나 의결내용 등 회의진행을 공개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의회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강진군의회가 발전되고 우리가 원하는 주민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방청석을 마련해 놓고 군민들이 방청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의당일 의회에 나오시면 방청이 가능하며, 방청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강진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30-3511~18)

회의록 열람안내

의회 회의록은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의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군의회 홈페이지 (http://gangjincl.go.kr/)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시거나, 의회사무과로 오시면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회의록 책자 비치되어 있음)





강진군의회 의원 연락처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의 장	위성식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010-9433-7818
부의장	문춘단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7 중흥S클래스빌	010-9866-6833
의회운영 위원장	김창주	강진군 강진읍 송계로	010-3610-0638
행정복지 위원장	김명희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010-8610-4788
농업경제 위원장	서순선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	010-3627-7666
의 원	윤기현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 3길	010-8667-7780
의 원	배홍준	강진군 선전면 신전중앙길	010-3608-7885
의 원	김보미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010-7331-0719





강진군의회 사무과 안내

▣ 의회 사무실 전화

부 서 별	일반전화	부 서 별	일반전화
의 장 실	430-3500	사무과장	430-3510
의장부속실	430-3503, 3504	전문위원	430-3505, 3507
		의회사무과	430-3511~18
부의장실	430-3502	FAX(사무과)	430-3519
의 원 실	430-3521~26	FAX(의장실)	430-3509

▣ 사무과 직원현황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사무과장	윤 재 평	전문위원	오 진 흠
전문위원	최 재 용	의사팀장	김 재 현
주 무 관	조 휘 신	주 무 관	김 호 중
주 무 관	김 도 형	주 무 관	김 정 인
주 무 관	최 태 근	주 무 관	김 동 환
주 무 관	김 정 웅	실 무 원	이 윤 영
실 무 원	주 현 우	실 무 원	양 교 원
실 무 원	이 승 희		